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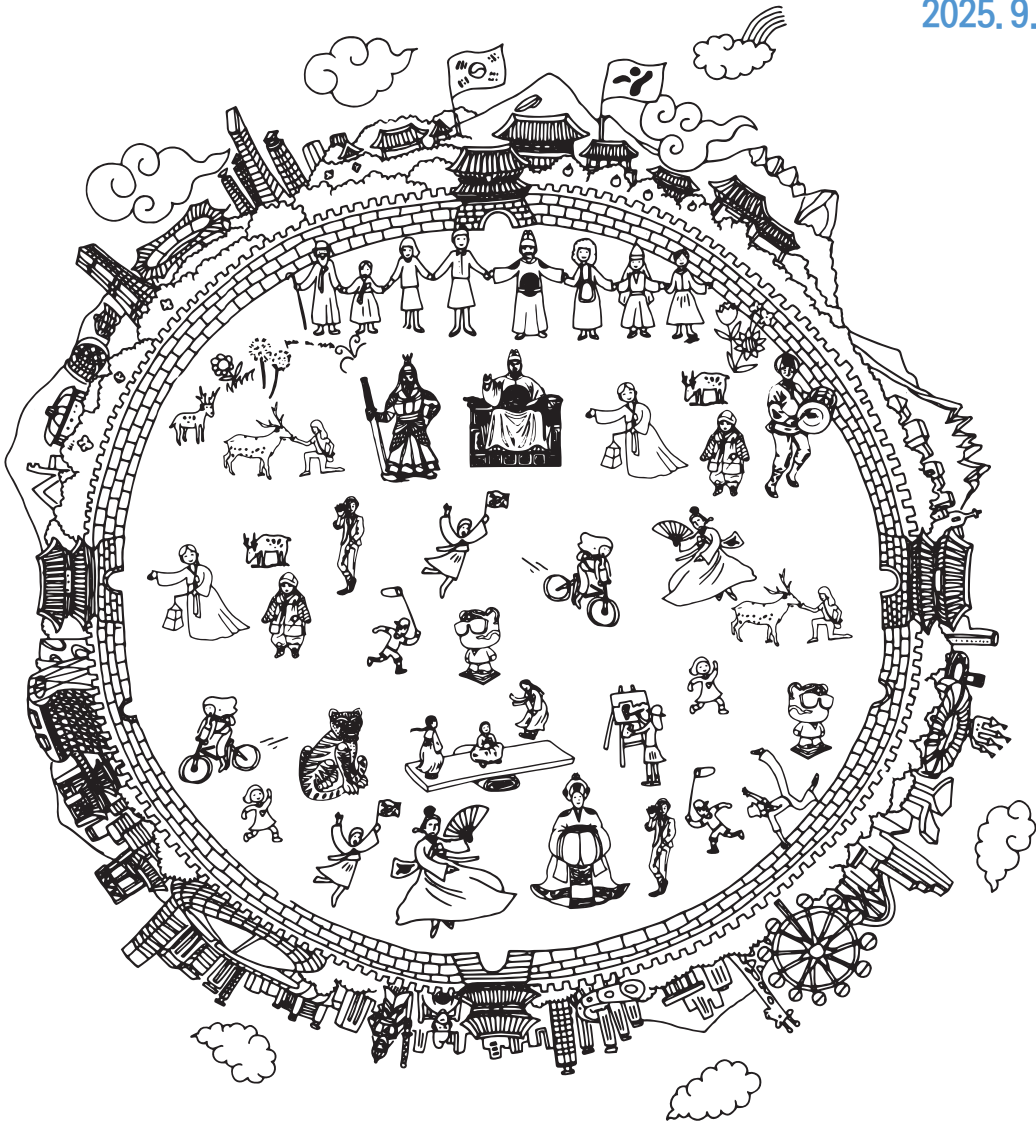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4096호
2025. 9. 29.(월)



목 차

◆ 자치법규 등

[조 례]

제9798호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
제9799호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6
제9800호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8
제9801호	서울특별시 국제 정책고문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
제9802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2
제9803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6
제9804호	서울특별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조례	32
제9805호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5
제9806호	서울특별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37
제9807호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0
제9808호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3
제9809호	서울특별시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45
제9810호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7
제9811호	서울특별시 빗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49
제9812호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52
제9813호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	54
제9814호	서울특별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58
제9815호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0
제9816호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4
제9817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66
제9818호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	68
제9819호	서울특별시 좁강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	70
제9820호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2
제9821호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4
제9822호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76
제9823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78
제9824호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80
제9825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85

제9826호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1
제9827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93
제9828호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96
제9829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9
제9830호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01
제9831호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03
제9832호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07
제9833호	서울특별시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09
제9834호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	112
제9835호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115
제9836호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19
제9837호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개정 등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121
제9838호	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학술 논문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	124
제9839호	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	128
제9840호	서울특별시 혁신경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131
제9841호	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시민도시 용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134
제9842호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36
제9843호	서울특별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	138
제9844호	서울특별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	141
제9845호	서울특별시의회와 국외 지방의회 간 상호결연 등 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	146
제9846호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49
제9847호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151
제9848호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53
제9849호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	156
제9850호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58
제9851호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60
제9852호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62
제9853호	서울특별시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64
제9854호	서울특별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	166
제9855호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69
제9856호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71
제9857호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75
제9858호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77
제9859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179
제9860호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81
제9861호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83
제9862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185
제9863호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187

제9864호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89
제9865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91
제9866호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93
제9867호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95
제9868호	서울특별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197
제9869호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99
제9870호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
제9871호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감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3
제9872호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지원 조례	205
제9873호	서울특별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9
제9874호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212
제9875호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14
제9876호	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217
제9877호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20
제9878호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	222
제9879호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224
제9880호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226
제9881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228
제9882호	서울특별시 조례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230
제9883호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39
제9884호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42
제9885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45
제9886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47
제9887호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廳)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249
제9888호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255
제9889호	서울특별시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	257
제9890호	서울특별시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65
제9891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274
제9892호	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78

[규 칙]

제4729호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82
--------	-------------------------------	-----

[훈 령]

제1064호	서울특별시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288
--------	-----------------------	-----

[예 규]

제743호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295
-------	--------------------------	-----

자치법규 등

[조 례]

◆ 서울특별시조례 제9798호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서울특별시장 또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적 협의체에서”로 한다.

제3조제6항 중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한다.

제4조 전단 중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의원”을 “서울특별시의회의원”으로, “거처”를 “거처(다만, 제7조제2항에 따라 심사를 받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의회”를 “지방의회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장은 심사위원을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다양하게 구성·위촉해야 한다.

⑥ 공무국외활동 심사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중 “제10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공무국외활동 계획 의결 후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누리집에 게시하여 시민 의견수렴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2항에 따른다.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공무국외활동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등) ① 공무국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활동계획서(이하 “공무국외활동계획서”라 한다)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에 앞서 공무국외활동

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활동계획서에는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계획과 간담회 결과 보고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활동계획서 제출 당시 사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개최 계획만 포함하고, 간담회 결과 보고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활동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활동계획서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하며,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11조(중전의 제10조) 제1항 전단 중 “위원회 또는”을 “상임위원회 또는”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활동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공무국외활동계획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외활동의”를 “공무국외활동의”로, “국외활동계획”을 “공무국외활동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활동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제11조(중전의 제10조)의 제목 “(공무국외활동계획서 제출 등)”을 “(공무국외활동계획서의 심사 및 게시 등)”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귀국한”을 “귀국한 상임위원회 또는”으로,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활동 결과를 보고하여야”를 “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공무국외활동보고서”를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공무국외활동보고서”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을 “누리집,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하는”으로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활동보고서의 적법·적정성을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공무국외활동보고서에 기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공무국외활동보고서는 심사위원회 심의 이후 처음 개최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를 각각 제14조, 제13조 및 제16조로 한다.

제13조(중전의 제13조의2) 제1항 전단 중 “공무수행”을 “공무국외활동 기간은 공무수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활동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활동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

④ 활동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활동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3항에 따른 활동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징계현황의 공개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활동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②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활동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지방행정중

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별표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무국외활동 심사기준

항목	심사기준	예	아니오
활동의 필요성	1. 공무국외활동 이외의 수단으로 활동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지방의정과외 관련성 (국제교류, 초청 목적활동 제외)	1. 정책 연구 및 벤치마킹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인가?		
	2. 방문지의 기관 면담자가 정해진 활동인가?		
	3. 해당 정책을 지역에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 또는 향후 다른 활동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5. 평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활동자의 적합성	1. 활동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활동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활동에 포함되었는가?		
	3. 활동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활동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활동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1. 활동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가?		
	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3. 국내외 등 활동을 자제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활동경비의 적정성	1. 공무국외활동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2. 타 기관으로부터 활동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3. 사적인 비용 지출 없이 공무국외활동을 수행하도록 계획하였는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		
	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		
국외활동 준비의 내실성	(비교시찰의 경우) 방문국과 방문기관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는가? (미개최 시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계획 제출)		
공무국외활동 보고서의 충실성 및 방문결과외 활용성	1. 기관 방문, 현지회의 등 공무국외활동 내용을 활동 목적에 맞게 작성하며, 증빙자료 확보에 관한 계획이 있는가?		
	2. 공무국외활동 결과 및 노하우를 활용 및 공유할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가?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활동 계획서

1. 활동개요

활동목적							
활동동기 및 내용							
활동기간	. . . ~ . . . (일간)						
활동국							
활동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활동경비	
						금액	부담기관
	계		명			천원	

2. 활동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 무 내 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활동자 개인별 업무 내용

연 번	소 속	직 급	성 명	업 무 내 용

※ 2인이상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활동경비

성명	계	체재비			항공운임	준비금	기타
		일비	식비	숙박비			
계							

4. 활동효과

5.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계획 및 결과 보고

6. 활동 주요정보 요약

공무국외활동 주요정보요약		
활동명		
활동자 명단	의원	
	직원	
	기타	
활동기간		
방문국가		
공식방문기관 (접촉자)		
여행경비	체재비	
	준비금	
	항공료	
	차량임차료	
	통역비	
	물품구입	
	기타비용	
	총 계	

비용 상세정보								
총 여행경비 (A+B+C +D+E+F+G)								
체재비 (A=a+b+c)								
	적용환율							
구분(금액)	급지	호수	상한	일수	인원	산출금액	실지금액	
일비 (a)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O / X]							
식비 (b)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O / X]							
숙박비 (c)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O / X]							
준비금 (B)	지급사유:					금액:		
항공료 (C)	이용구간:					금액:		
차량임차료 (D)	이용일수: 이용차량:					금액:		
통역비 (E)	이용내역:					금액:		
기념품 등 물품구입 (F)	구입목적: 물 품 명:					금액:		
기타비용 (G)	지급사유:					금액: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활동 보고서 작성요령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 보고서의 규격은 A4(210mm × 297mm)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20쪽 이상이어야 함.

2. 보고서 구성형식

-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중앙에 함.

<목차 구성 예시>

- I. (서론부분) : 활동의 배경 및 활동세부내용,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등
- II.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 III.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 IV.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총면수

- 보고서의 맨 첫 장(겉표지)에는 제목제출연월소속의회를, 둘째 장(속표지)에는 활동국·활동목적·활동기간·보고서 작성자 및 활동자 인적사항, 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셋째 장에 목차를 기재

(1) 겉표지 예시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활동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

(2) 속표지 예시

공무국외활동 개요

1. 여 행 국 :
 2. 활동목적 :
 3. 활동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활동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
- | 소속위원회 | 성 명 | 비 고 |
|-------|-----|-----|
| | | |
6.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 심사위원회에서 기재
- | |
|--|
| |
|--|

3. 첨부자료

○ 활동계획서 및 회의록

※ 부결되었다가 재의결된 경우 부결된 심사위의 회의록도 포함

○ 실제 활동 수행 활동 주요정보 요약(별지 제1호 서식의 6.활용)

※ 활동자 취소, 현지 일정변경 등에 따른 활동, 비용 변동을 반영

○ 활동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4. 작성시 참고사항

○ 보고서는 최신 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활동하게 될 활동자를 위한 조언, 기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

※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 합동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개별 의원별 보고서를 포함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의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으로서 법 제27조에 따라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시정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제도개선은 대시민 신뢰도 향상과 청렴한 지방의회 구축의 기초가 되고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 등에 ‘17개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 23.7.25.)를 통해 지방의회 민간위원 외부 추천 등 공무국외출장 타당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였음
-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을 마련하고 있어 (’ 25.1.14., 선거의회자치법규과), 이들 권고 사항을 도입하여 시민의 서울특별시의회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공무국외활동 적용범위에 전국적 협의체에서 요청한 경우를 규정함(제2조)
- 나. 공무국외심사위원회 위촉시의 외부 추천 및 공모 절차를 규정함(제6조제2항)
- 다. 공무국외활동계획서의 출국 45일 이전 게시 및 시민 의견 청취에 관하여 규정함(제10조 신설)
- 라. 공무국외활동계획 의결 후 변경 시 재심사 및 계획서의 의회 누리집 게시에 관해 규정함(제8조제4항 및 제11조제2항)
- 마. 공무국외활동보고서의 사후 심사 및 결과 보고 절차를 구체화 함(제12조)
- 바. 공무국외활동 기간 및 예산 편성·집행 시의 금지행위를 규정함(제1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사. 공무국외활동과 관련한 징계의결 요구 및 게시 의무에 관해 규정함(제15조 신설)
- 아. 공무국외활동 심사에 필요한 별표 및 별지서식을 권익위원회 표준안에 부합하도록 정비함(별표, 별지서식 등)

◆ 서울특별시조례 제9799호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제13호 및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복지 증진
12. 외국인노동자 인권 보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나, 여전히 합법적으로 입국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되려 불법체류자 등으로 낙인찍히거나 한국인이 기피하는 3D 블루 직종에만 취업이 제한되는 등 이주노동자로서의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 등이 존재하는 실정
- 특히, 외국인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임금 현장 구조에 국한되어 있는바,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복지 증진 등 근로조건 개선, 인권 보호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외국인노동자의 노동, 인권 보호 등 지원사업을 구체화하여 규정함(제7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800호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외국 지방정부’란”을 ““외국 지방정부 등”이란”으로, “외국의 지방정부를”을 “다음 각 호의 기관을”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외국의 지방정부
2. 외국의 지방정부 산하 또는 관련 공공기관
3. 국제개발협력 또는 국제교류 관련 국제기구

제6조제1호 중 “지방정부와”를 “지방정부 등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국제개발협력기금의 수혜 및 교류 대상을 외국의 지방정부 외에 관련 국제기구, 공공기관 까지 포괄하여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함

2. 주요내용

- 가. 정의규정의 “외국 지방정부” 를 “외국 지방정부 등” 으로 수정하고, 그 범위를 외국의 지방정부와 그 산하 또는 관련 공공기관, 국제개발 협력 또는 국제교류 관련 국제기구로 확대함(제2조)
- 나. 국제개발협력기금의 용도를 “외국 지방정부 등” 과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확대함(제6조제1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9801호

서울특별시 국제 정책고문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국제 정책고문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국제 정책고문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서울시의 도시외교의 정책방향과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정책고문은 서울시 도시외교 정책방향 제시와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에 협력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인권, 평등 등 보편적 가치와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중시하는 외교 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조례에 도시외교 관련 기능과 협력사항을 보완하여 정책고문이 정책방향 제시와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국제 정책고문의 기능에 ‘서울시 도시외교의 정책방향과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2조제4호 신설)
- 나. 국제 정책고문의 협력사항에 ‘서울시 도시외교 정책방향 제시와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에 협력’ 하는 내용을 추가함(제5조제3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9802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주요시설물 관리기관(제5조 관련)

구 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도로	서울특별시도	○ 도로시설물 중 한강교량, 1종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	재난안전실장
		○ 차도관리(버스전용차로,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전용차로 포함)	도로사업소장
		○ 도로시설물(한강교량, 1종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 제외)	
		○ 보도관리(측구, 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보행자겸용 도로 포함)	자치구청장
	자동차전용도로	○ 차도 및 보도 관리(청소 포함) ○ 녹지 및 가로수 ○ 도로시설물	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도로부속물	공동구	○ 공동구	재난안전실장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	○ 서울특별시도(자동차전용도로 포함)의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생태통로 포함)	자치구청장
	가로등 · 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	○ 자동차전용도로의 가로등 · 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	재난안전실장
		○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	도로사업소장
	나머지 도로부속물 (방호울타리 · 중앙분리대 · 과속방지시설 · 미끄럼방지시설 · 충격흡수시설 · 낙석방지망 · 절개지 · 도로 옹벽 · 방음벽 · 맨홀 등)	○ 서울특별시도의 가로등	자치구청장
		○ 서울특별시도의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에 대한 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	
		○ 자동차전용도로(차도 및 보도)의 나머지 도로부속물	재난안전실장
		○ 한강교량, 1종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에 대한 나머지 도로부속물	
		○ 서울특별시도(차도)의 나머지 도로부속물(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차로 포함)	도로사업소장
		○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나머지 도로부속물(한강교량, 1종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 제외)	
		○ 서울특별시도(중앙버스전용차로 제외)의 보도에 대한 나머지도로부속물(보도의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부속물 포함)	자치구청장
		○ 중앙버스전용차로의 나머지 도로부속물	도로사업소장
교통관리시설	지능형 교통체계	○ 교통정보의 수집, 제어, 가공, 제공시스템 및 관련 설비와 긴급 연락시설	교통실장
	버스전용 차로 단속 시스템	○ 버스전용차로(중앙 및 가로변) 유 · 무인 단속시스템	교통실장
	도로표지	○ 문안검토	교통실장
		○ 자동차전용도로의 도로표지	재난안전실장
		○ 한강교량, 1종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의 도로표지	
		○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도로표지(한강교량, 1종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 제외)	도로사업소장
교통안전시설	신호기 · 안전표지	○ 서울특별시도의 도로표지	자치구청장
		○ 지침운용, 사업계획 수립 등 업무총괄	교통실장
		○ 자동차전용도로의 안전표지	재난안전실장
		○ 서울특별시도의 노면표지	
		○ 서울특별시도의 신호기 및 안전표지	도로사업소장
		○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	
교통안전	시선유도표지 · 시선유도봉 · 갈매기표지	○ 신호기 공사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 관할 도로의 안전표지 설치	자치구청장
		○ 구 관할 도로의 안전표지 설치 및 관리	
		○ 지침운용, 사업계획 수립 등 업무총괄	재난안전실장

관련 도로 부속물	• 도로반사경·차량 진입금지시설 및 무단횡단금지 시설, 교통섬 등	○ 자동차전용도로의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	재난안전실장
		○ 한강교량, 1종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에 대한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	
하 천 시 설	한강	○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 (한강교량, 1종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제외)	도로사업소장
		○ 서울특별시도의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보도의 차량진입금지시설·교통 섬 제외, 중앙 및 환승정류소 보도관리 포함)	
		○ 서울특별시도(보도)의 차량진입금지시설, 교통섬	자치구청장
	국가 및 지방 하천(한강 제외) · 국가 및 지방 하천 이외 하천	○ 한강의 제방, 호안, 수제, 보, 관측시설 등	미래한강본부장
		○ (육)갑문의 구조물, 조명시설 및 진입로 시설물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자치구청장
하 수 도	공공하수 처리시설	○ (육)갑문의 문짝, 권양기 시설물, 통로청소, 수문개폐	
		○ 제방, 호안, 수제, 보, 관측시설 등	자치구청장
		○ 빗물펌프장(유수지 포함)의 구조물, 배수펌프 및 부대시설물	
	차집관거	○ 호안블록, 옹벽, 도수로, 우수토실시설 및 부대시설물 등	
복개 구조물	하천복개구조물	○ 수문의 구조물·문짝·권양기 등 관련 시설	
		○ 갑문의 구조물·문짝·권양기·통로청소·수문개폐 등	
		○ 갑문의 조명시설 및 진입·진출로 시설	
		○ 그 밖의 하천시설	
하 수 도	공공하수 처리시설	○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물재생센터소장 (위탁업체대표)
	차집관거	○ 차집관거 및 부대시설	물재생센터소장 (위탁업체대표)
	하수관거	○ 하수관거 및 부대시설	자치구청장
복개 구조물	하천복개구조물	○ 도로기능 하천복개구조물	도로사업소장 또는 자치구청장
		○ 도로기능 외 하천복개구조물	주 기능별 설치사용자

비 고 : 위 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시설물관리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청계천 제외지(堤外地)와 청계천 복개구간의 개구부(開口部) 수문 : 물순환안전국

나. 청계천로(태평로에서 고산자로 사이에 위치한 도로 부분을 말한다) 천변 측에 설치된 방호울타리 : 재난안전실장

다. 하천과 공원 내 자전거도로는 하천과 공원 관리자를 자전거도로 관리자로 함

라. <삭 제>

참고1) “차도”란 보·차도 경계측구를 제외한 포장측을 말함.

참고2) 도로부속물의 “절개지”란 도로 개설로 인하여 절토된 부분의 비탈면을 말함.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한강교량 및 1종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의 도로표지 관리기관을 기존 도로사업소에서 한강교량 및 1종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 관리기관인 재난안전실로 일원화하여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한강교량과 1종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에 부착된 도로표지의 관리기관을 재난안전실장으로 함(별표 1)

◆ 서울특별시조례 제9803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차집 관거”라 함은 오수와 일정량의 빗물을 차집 하여”를 ““차집관로”라 함은 「하수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수를 차집하여”로, “관거 및”을 “관로와”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주민협의회와”를 “제16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협의회와”로 한다.

제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3의”를 “별표 3의”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서울시가”를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제4호, 제5호 및 제6호로 하면서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한편, 같은 항 제3호(중전의 제2호) 중 “지역주민”을 “규칙으로 정한 지역의 주민”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중전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중전의 제4호) 중 “고엽제후유증 환자 차량, 경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 요일제 준수차량”을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을 제시한 차량, 경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로 한다.

2.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에서 주관하는 행사

4. 18세 이하인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다동이 행복카드 발급대상자

제7조제2항제2호 중 “차집관거”를 “차집관로”로 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한편,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같은”을 “주변영향지역 또는 같은”으로, “주민대표”를 “주민대표 8명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이공계분야”를 “이공계 분야”로 같은 호의 단서 중 “주민대표가”를 “위원장이”로 한다.

① 주민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주민대표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제18조제2항 중 “위원장이”를 “시장이나 위원장이”로 한다.

[별표 1] 중 시설명란에 위치한 각각의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차집관거”를 각각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차집관로”로 한다.

[별표 2], [별표 3]을 다음의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2]

사용료(제5조의2 제1항 관련)☐ 체육시설

구 분	기 준 및 사 용 료
테니스장	- 개인사용료(1면 1시간 기준) 5,000 ~ 7,500원 - 조명사용료(1시간 기준) 5,000 ~ 7,500원
탁구장	- 1일(1면 2시간 기준) 3,000 ~ 4,500원
파크골프장	- 개인사용료(1회, 2시간 기준) 3,000 ~ 4,500원 - 물품대여료 1,000 ~ 1,500원

☐ 주차시설

구 분	기 준 및 사 용 료
주차장	- 1회주차(10분당) 200 ~ 300원 - 월정기권(미거주차) · 전일(24시간) 70,000 ~ 105,000원 · 주간(08:00 ~ 19:00) 50,000 ~ 75,000원 · 야간(18:00 ~ 익일09:00) 20,000 ~ 30,000원

[별표 3]

사용료 감면 범위(제5조의2 제3항 관련)

1. 체육시설

가. 시장이 정하는 지역주민의 감면율은 60%로 하되 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추가 적용할 수 있다.

나. 기타

감면대상	감면율 (%)
1.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	100
2.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교육행사	100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사람	50
4.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한 사람	50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한 사람	50
6.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대상자로서 이를 제시한 사람	50
7. 65세 이상인 사람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함)	50
8. 18세 이하인 사람 (학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함)	50
9.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한 사람	50

※ 비고 : 2개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2. 주차시설

가. 시장이 정하는 지역주민의 감면율은 60%로 하되 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추가 적용할 수 있다.

나. 기타

감면대상	감면율(%)
1.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 차량	100
2.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교육 행사 차량	100
3. 외교공관 및 외교관 차량, 공무수행차량,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100
4.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발행일로부터 1년간)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100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하는 차량	80
6.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하는 차량	80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80
8. 65세이상의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함)	80
9.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50
10.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대상자로서 이를 제시한 차량	50
11.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차량	20
1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차량	100 (단,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경우 50)

※ 비고 : 2개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주민협의회 주민대표 추천, 위원장 선출 규정 등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감면대상 등에 대한 사항을 현행화하는 등 일부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주민협의회 구성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위원장 선출 규정을 신설함(제16조제2항)
- 나.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증서가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됨에 따라 사용료 감면대상 조항 등을 수정함(제5조의2제3항)
- 다. 편익시설 중 체육시설(테니스장, 탁구장, 파크골프장)의 사용료 기준을 단순화하여 보다 현실화함(별표 2)

◆ **서울특별시조례 제9804호**

서울특별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재난·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통해 시민의 재난 예방 및 초기대응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안전 교육”이란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재난 예방 및 초기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방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응급처치 교육”이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라 시민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3.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시민안전기본교육”이란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제1호의 소방안전 교육과 제2호의 응급처치 교육 중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할 사항을 단계별로 학습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교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 대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2.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에 관한 사항
3. 교육 시설·장비·인력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안전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교육에 관한 사항
5. 시민안전기본교육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6. 교육의 홍보 및 참여 활성화 방안
7. 그 밖에 시장이 교육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의 시행 실적 및 효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 일반운영)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

며 성별·연령별·계층별 특성을 고려한다.

②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화재 등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2. 지진·풍수해 등 자연재난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3. 생활안전 등 일상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4.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 과정을 개발·시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 방법, 교육 대상, 내부 및 외부 강사 자격 등 교육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안전취약계층 맞춤형 교육) ①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안전취약계층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교육자료 및 안전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 홍보) 시장은 시민의 활발한 교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시민안전과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화재, 재난·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대시민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통해 시민의 재난 예방 및 초기대응 역량을 향상함으로써 자신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화재, 재난·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통해 시민의 재난 예방 및 초기대응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 나. 소방안전 교육, 응급처치 교육, 시민안전기본교육,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제2조)
- 다. 시장에게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는 한편,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제3조, 제4조)
- 라.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은 시민의 성별, 연령별, 계층별 특성을 고려토록 하면서 교육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함(제5조)
- 마. 안전취약계층에게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육자료 및 안전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6조)
- 바. 시장은 시민의 활발한 교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적극 실시하도록 함(제7조)
- 사.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기존 「서울특별시 시민안전과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토록 함(부칙)

◆ 서울특별시조례 제9805호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법」 제8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병무청장이 선정한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역명문가로 선정되어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병역법」 제82조의3에 병역명문가의 선정 요건 및 절차가 법률로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조례의 병역명문가 정의를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 또한 예우대상자 요건 중 ‘병역명문가증 발급’ 조건을 삭제하고, 법령에 따라 선정된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하여 대상자를 규정함으로써, 운영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병역명문가의 정의를 「병역법」 제8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선정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병무청장이 선정한 가문으로 정비함(제2조제1호)
- 나. 예우대상자 요건에서 ‘병역명문가증 발급’ 을 삭제하고,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사람 중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함(제2조제2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9806호**

서울특별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각각” 을 “각각 공평하게” 로 한다.

제5조제2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역 간 관광 불균형 해소 방안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있고, 그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를 “있다” 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서울특별시(이하 “시” 라 한다)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회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

2. 관광·사회·경제 등 관련 전문가

3. 공정관광 관련 법인·단체의 대표

4. 공정관광에 대한 관심과 경험을 가진 시민

5. 그 밖에 공정관광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시 관광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간사가 된다.

제8조제2항 중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을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구성위원” 을 “재적위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를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로 한다.

제10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관광 불균형 해소를 위한 사업

제11조제1항 중 “제11조” 를 “제10조” 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11조” 를 “제10조” 로 한다.

제14조 전단 중 “전부 또는 일부” 를 “일부”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시는 외래 관광객 확대를 위한 3·3·7·7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해당 정책을 통해 서울을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이 주로 방문하는 관광지는 서울의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음
- 특히 관광 수요가 수용 가능 대비 초과된 지역에서는 오버투어리즘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증가하고 있는 외래 관광객의 수요를 서울 전 지역이 고르게 흡수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신설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 전 지역의 고른 관광 수요 창출을 위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상 지역 간 관광 불균형 해소 방안 신설함(제5조제2항제4호)
- 나. 위원회 비상설화 전환에 따른 조례 정비(제6조 및 제7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807호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한강 수상레저활동안전협회의 설치) ① 시장은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협조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한강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이하 “안전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안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제도의 개선 및 보완
2. 수상레저활동 안전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업무의 협조
3. 수상레저활동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
4. 그 밖에 시장이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현행 제9조제1항 중 “제8조”를 “제11조”로 하며,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안전협의회 구성 등) ① 안전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서울특별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3. 수상레저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4. 그 밖에 수상레저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학계 및 민간단체 전문가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안전협의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안전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안전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

구한 경우 개최한다.

③ 안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전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⑤ 안전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안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안전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최근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한강을 찾는 시민들이 증가하면서 수상스키, 카약, 서핑 등 다양한 수상레저활동이 활발하게 행해지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조례는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한 ‘한강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이하 “안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례상 세부 입법 규정은 불비(不備)한 상태임
- 안전협의회 설치 취지는 수상레저활동 안전 업무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과 단체 간의 협력체계를 통한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것임
- 또한, 서울시가 1,000만 한강 수상 이용 시대를 열겠다는 “2030 리버시티, 서울” 계획에 따라 한강에서의 수상 안전 강화의 필요성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수상레저의 활동성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안전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한강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를 설치하고,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제도의 개선, 안전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업무의 협조,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협의하도록 함(제6조)
- 나. 안전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7조)
- 다. 안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8조)
- 라. 관계 전문가에 대한 의견 청취 등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협조 요청 규정을 신설함(제9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808호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한강버스 선착장” (이하 “선착장” 이라 한다)이란 한강버스의 안전한 접안 및 승선·하선을 할 수 있게 한 시설로 승객의 대기, 편의시설, 문화공간, 육상교통 연계 등을 위한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수상교통 거점을 말한다.

제3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한강버스 운영에 있어서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⑥ 시장은 한강버스 운영 및 선착장 관리 등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마련하고,” 를 “마련하고, 선박 및 선착장 등 관련 시설의”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자는 한강버스 운항에 이용되는 선박 및 선착장 등 관련 시설의 성능 저하 또는 안전사고 발생 시 그 원인 규명 및 책임소재에 관한 시장의 요구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중 “재정지원” 을 “시장은 재정지원” 으로, “사항은” 을 “사항에 관하여” 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 내용에는 사업자의 방만 경영을 방지하고 재정지원의 투명성 확보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한강버스는 서울시의 핵심 수상 교통사업으로, 최근 한강버스 선착장 등 관련 인프라의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음. 그러나 선착장 등 수상 교통시설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관리 규정이 미비하여, 조례상의 혼란이 발생하고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한강버스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 서울시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한강버스 선착장’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제2조제7호 신설)
- 나. 시장의 책무에 교통약자 대책 마련 및 시민의견 수렴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제3조제5항, 제6항 신설)
- 다. 사업자의 책무에 시설의 성능 저하 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과 책임소재에 관한 성실 대응 규정을 신설함(제4조제2항 신설)
- 라. 사업자의 방만경영 방지를 위한 내용을 신설함(제8조제3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809호

서울특별시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시민의 휴식과 여가 증진을 위하여 수목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및 공간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최근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녹색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수목원의 기능을 기존 수목유전자원의 수집·보존 및 연구 중심에서 시민의 휴식과 여가 공간으로 확대하고자 함. 이에 따라 시장의 책무에 관련 시책 마련을 명시함으로써, 수목원이 식물 전시·연구공간을 넘어, 복합문화·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의 책무에 수목원을 통한 시민의 휴식과 여가 증진을 위한 시책마련 노력을 명시하여, 정책적 방향성을 강화함(제3조제3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9810호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환경교육 실행 방안
7. 환경교육을 위한 민간 활동의 활성화
8. 환경교육계획의 이행평가 및 평가 결과의 환류에 관한 사항
9. 환경교육계획의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10.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2022년, 동 조례의 상위 법령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시·도 환경교육계획 수립’에 대한 의무가 규정되었고 수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 위임되었음
- 이에 2023년 서울특별시에서도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환경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현재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환경교육계획’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특성과 여건의 반영’ 및 ‘이행평가 결과의 환류’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환경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따라 정비함(제4조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811호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 시설(제22조제2항 관련)

구 분	시 설 규 모
1. 건축물	공공기관 ¹⁾ 에서 건설하는 건축물
	연면적 10,000㎡ 이상 또는 11층 이상의 건축물(민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2. 공동주택	공공기관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
	6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민간)
3. 구조물	교량, 고가차도, 육교 등 콘크리트구조물 및 강철구조물 등
4. 공간조명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등(개량 제외)
5.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신설, 개량 등)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서면심의(최초 심의 및 필요시 대면심의)

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민간 소규모 건축물 및 공동주택에 대한 좋은빛위원회 심의 대상을 축소하여 신청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좋은빛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공공기관에서 건설하는 건축물과 공동주택을 심의대상에 추가하여 공공사업에 대한 빛환경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민간 건축물 및 공동주택의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을 축소함(별표)
- 나. 공공기관에서 건설하는 건축물 및 공동주택을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에 추가함(별표)
- 다. 미디어파사드 콘텐츠는 서면심의하되, 최초 심의 및 필요시 대면심의하도록 함(별표)

◆ 서울특별시조례 제9812호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
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 “불투수층(不透水層)” 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를 “ “불투수
면(不透水面)” 이란” 으로, “눈녹은” 을 “눈 녹은” 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유출지하수 발생 시 유출지하수의 처리 또는 이용·함양을 위한 계획

제9조제1항 본문 중 “사업구역내에서 빗물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빗물분담량을 적
용한 빗물관리시설 도입을 계획하여” 를 “제8조제2항의 저영향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로 한
다.

제36조 본문 중 “빗물관리시설” 을 “빗물·유출지하수 관리 및 이용”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
호 중 “빗물관리시설” 을 “빗물관리시설과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빗물관리” 를 각각 “빗물·유출지하수 관리 및 이용” 으로 한다.

제37조 본문 중 “빗물관리시설의 중요성을” 를 “빗물·유출지하수 관리 및 이용의 중요성을”
로, “빗물관리시설의 설치률” 을 “빗물관리시설과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설치률”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빗물관리의 중요성 및” 을 “빗물·유출지하수 관리 및 이용의 중요성과”
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빗물관리” 를 “빗물·유출지하수 관리 및 이용”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물순환의 범위를 빗물에서 유출지하수까지 확장하여 물순환 효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관련법에 맞춰 용어를 정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관련법에 맞춰 용어를 정비함(제2조제4호)
- 나. 물순환 범위를 유출지하수까지 확장하고자 관련 내용을 추가함(제8조제2항4호, 제9조1항, 제36조 본문, 제36조제1호에서 제3호, 제37조 본문, 제37조제2호, 제37조제4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9813호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물다양성”이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2. “생태계”란 식물·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3.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물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태계교란 생물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서울특별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및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 및 관리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류별 분포현황 및 실태조사
2.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방제 계획
3.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거·처리·재활용 방안
4.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 및 방제 기술 개발
5. 그 밖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추진계획이 다음 각 호의 계획 중 어느 하나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연환경보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2.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3.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수립하는 다른 계획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사업지원) ① 시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 및 관리에 참여하는 시민, 기업·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활동
2. 생태계교란 생물 수거·처리·재활용
3.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를 목표로 하는 행사 및 대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사업비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절차, 방법 및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보고 등) ① 제7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지원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금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금 환수) ① 시장은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4.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또는 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1조(홍보) 시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홍보하여야 한다.

제12조(시민 참여 활성화) 시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 및 관리 활동에 대하여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를 위하여 자치구, 관련 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서울시는 현재 일부 하천과 산을 중심으로 붉은귀거북, 베스,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등 다양한 생태계 교란 생물이 발견되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특히 외래생물이 국제교역·반려동물 방사·기후변화 등 다양한 경로로 유입되고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가(환경부) 차원의 대응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한 실정임
- 이에 따라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지속 가능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제4조)
- 다.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함(제5조)
- 라.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함(제6조)
- 마. 지원 사업의 지원, 보고, 지도 및 감독, 지원금 환수 등에 대해 규정함(제7조~ 제10조)
- 바. 홍보 및 시민참여 활성화에 대해 규정함(제11조 및 제12조) 사. 자치구,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에 대해 규정함(제13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814호

서울특별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사상소방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순직소방공무원: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제4조의2, 제5조에 따른 공무원 재해로 사망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사람
2. 공사상소방공무원: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제4조의2 따른 공무원 재해로 인해 공무원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는 소방공무원의 순직 범위를 소방활동 등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위험순직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 일반순직 소방공무원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일반순직 소방공무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순직 또는 공상으로 판정된 소방공무원을 공사상소방공무원으로 정의하여 지원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함(제2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815호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계약상대자(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자를 포함한다)”를 “계약상대자(이하 하도급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급공사 계약상대자는 기성부분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경우, 실제 투입된 별지 제1호 서식의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를 첨부하여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건설기계 임대료로 한정한다)하며, 건설 기계 임대료는 공사대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공사감독자는 제3항에 따른 건설기계 사용 확인서를 점검하여 즉시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계약부서 담당자는 신속한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⑤ 관급공사 계약상대자는 공사대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에 의해 계약상대자로부터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2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

- ☐ 사업공사명 :
- ☐ 업체명(원도급자) :
(하도급자) :
- ☐ 장비상호 및 기종명 :

건설기계 소유자			임대료 청구내역			건설기계소유자 확인 (인)	비고 (원도급자, 하도급자)
성명	연락처	주소	등록번호	사용기간	장비사용료 금액(원)		
				~ (일간)			
합계							

상기 공사사업에서 건설기계 임대료(하도급자 포함) 청구 내역 및 건설기계(하도급자 포함)
사용내역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계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확인	부서	직급	성명	비고
공사감독자			(인)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

- ☐ 사업공사명 :
☐ 업체명(원도급자) :
 (하도급자) :
☐ 장비상호 및 기종명 :

건설기계 소유자			임대료 지급내역		건설기계소유자 확인 (인)	비고 (원도급자, 하도급자)
성명	연락처	주소	임대기간	장비임대료 청구금액(원)		
			~ (일간)			
합계						

상기 공사사업에서 건설기계 임대료(하도급자 포함) 지급내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계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인)

확인	부서	직급	성명	비고
공사감독자			(인)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귀하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건설기계를 임대차한 관급공사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절차 확인을 강화해 체불을 미연에 방지하고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계약상대자에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를 모두 명시함(제6조제1항)
- 나. 관급공사 계약상대자에게 기성부분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경우 건설기계 사용 확인서를 발주기관의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토록 하고, 건설기계 임대료는 공사대금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토록 규정을 신설함(제6조제3항)
- 다. 공사감독자에게 건설기계 사용 확인서를 점검하여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신속한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제6조제4항)
- 라. 관급공사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공사감독자는 건설기계 임대료가 적절하게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토록 규정을 신설함(제6조제5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816호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반영하고”를 “반영해야 하며”로, “명시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신기술개발자”라 한다)”를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건설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신기술개발자”라 한다)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신기술의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 및 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하여 연간 발주 공사비의 100분의 4 이상에 신기술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사전검토의무) ① 발주청은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신기술을 사전에 검토하고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여 보고토록 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사전 검토 결과를 토대로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시의 건설 신기술 활용 수준은 해외 주요 도시와 비교하여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제도적 지원을 통해 도입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임
- 또한 현행 조례가 신기술 활용을 장려하고는 있으나 실제 적용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규정이 부족한 실정임
- 이에 공사 설계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신기술 적용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발주청은 사전 검토 결과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그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신기술을 설계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하여 신기술 활용의 실질적인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건설공사의 계약 체결 시 발주청은 공사계약서에 사용되는 신기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신기술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를 추가함(제10조제1항)
- 나.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품질 제고와 신기술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연간 발주 공사비의 100분의 4 이상에 신기술을 적용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함(제10조제2항)
- 다. 발주청이 공사를 시행할 때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신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시공성과 경제성 등 우수성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제10조의2제1항)
- 라. 발주청은 사전 검토 결과를 토대로, 해당 신기술이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함(제10조의2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817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제4호 중 “800퍼센트” 를 “880퍼센트”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사대문안의 서울도심부는 강북지역의 주요 중심지로서 고밀복합개발 등 활성화가 필요하며, 또한 현재까지 기반시설 부족 및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곳도 다수 있어 지속적인 정비 촉진이 필요한 지역임
- 이러한 현황에 따라 서울도심부에 대해 고밀복합개발을 유도하고 지역 필요시설 및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서울도심부에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시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조례상 용적률 600%에도 불구하고 800%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왔음
- 다만, 도시계획 조례 개정('24.10.14.)으로 인해 서울도심부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은 당초 600%에서 660%까지 완화되는 여건 변화가 있었으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용적률은 여전히 800%로 유지됨에 따라 정비사업 촉진 및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 시 용적률 완화의 필요성이 있음
- 또한, 도심부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일반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880%까지 가능하게 되었음에도, 도심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용적률은 여전히 800%까지만 가능함에 따라, 동일 용도지역 내 사업 간 불균형이 발생하여 정비사업 촉진이 필요한 도심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활성화 자체가 우려됨
- 동일 용도지역 내 사업간 불균형 해소 및 도심부의 고밀개발을 통한 강북과 강남의 지역 간 균형발전, 중심지 기능 고도화를 위하여 서울 도심부에서 시행되는 재개발사업의 용적률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

2. 주요내용

- 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시 일반상업지역의 서울도심 내 용적률을 800퍼센트 이내에서 880퍼센트 이내로 변경함(제51조제2항제4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9818호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3층 또는 12미터”를 “4층 또는 16미터”로, “30퍼센트”를 “4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경관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 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입면면적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영 제22조제2호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제25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 : 법 제30조제1항 제7호에 따른 경관심의 사항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관심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자연경관지구의 경관심의 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시민·사업자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또한 경관심의 이후 건축계획 변경 시, 경미한 변경에도 재심의를 진행하는 사례가 있어 심의의 실효성 및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재심의 생략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 아울러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운영 현황을 현행화하여 제도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자연경관지구 내 경관심의 대상 기준을 기존 ‘높이 3층 또는 12m 초과, 건폐율 30% 초과’ 를 ‘높이 4층 또는 16m 초과, 건폐율 40% 초과’ 로 완화함(제24조제1항)
- 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경미한 규모 변경에 대한 재심의 생략 기준을 신설함(제24조제3항)
- 다. 서울시 경관위원회 기능 수행 가능한 위원회를 현행화 함(제25조제2항제9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9819호

서울특별시 줌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줌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줌깅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협력체계 구축)”을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구축할 수 있다”를 “구축할 수 있고, 기업의 사회공헌 및 자원봉사 활동 등에 줌깅이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줍깅은 환경보전과 건강 증진을 동시에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환경운동으로, 시민 참여와 관심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 이에 줍깅문화의 사회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자원봉사 활동과 연계하여 민간 참여 기반을 넓히고자 함
- 또한 줍깅 활동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과의 협력사업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속가능한 줍깅 문화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업의 사회공헌 및 자원봉사 활동과의 연계 및 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7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820호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음수대를 신규 설치하거나 정비할 때에는 장애인·고령자·임산부·어린이 등 다양한 이용계층의 접근성, 안전성 및 편의성을 고려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고령화, 출산·육아 환경 변화,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보장 요구 확대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조례상에 음수대 설치 대상 외에 장애인·고령자·임산부·어린이 등 다양한 이용계층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보장하는 규정 마련이 요구됨
- 이에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음수대의 이용 편의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및 어린이 등 다양한 이용계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명시함(제6조제3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9821호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생태계서비스”란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혜택을 말한다.

- 가. 식량, 수자원, 목재 등 유형적 생산물을 제공하는 공급서비스
- 나. 대기 정화, 탄소 흡수, 기후 조절, 재해 방지 등의 환경조절서비스
- 다. 생태 관광,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휴양 등의 문화서비스
- 라. 토양 형성, 서식지 제공, 물질 순환 등 자연을 유지하는 지지서비스

제6조제3항제1호 중 “자연환경·생태계서비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생태계서비스를 말한다)”를 “자연환경·생태계서비스”로 한다.

제16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제공 및 증진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생태계 보전 등 시책 수립) 시장은 생태계의 균형이 파괴되지 않도록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또는 생태계서비스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최근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인해 생태계가 훼손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생태계서비스(Ecosystem Services)의 가치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음. 생태계서비스는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얻는 다양한 혜택을 의미하며, 이를 적절히 보전하고 증진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임
- 그러나 현행 조례에서는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개념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증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으로 생태계서비스의 개념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한 시책 수립을 의무화하여 서울시의 자연환경 보전 정책을 한층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생태계서비스 개념을 신설함(제2조제1항10호)
- 나. 불필요한 중복 표현을 정리함(제6조제3항제1호)
- 다.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의 근거를 신설함(제16조제2항, 제16조의2)

◆ 서울특별시조례 제9822호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이차전지 폐기물의 수거·재활용 체계 구축) 시장은 자원순환 촉진과 화재 예방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리튬이온전지 등 이차전지(외부의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의 형태로 전환하여 저장하는 장치로서 적합한 사용 수명을 가지고 충전 및 방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전지를 말한다) 및 이차전지가 장착된 폐전기·폐전자제품(이하 “이차전지 폐기물”이라 한다)의 안전한 수거 및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동주택, 공공청사 등 시민 생활공간에 전용 안심수거함(화재 위험 방지를 위하여 불연성 재질 등으로 제작된 이차전지 폐기물의 전용 수거 용기를 말한다) 설치
2. 이차전지 폐기물의 정기적 수거·운반·보관·재활용 체계의 설계 및 운영·지원
3. 전문기관과의 연계와 협력을 통한 안전성 확보 및 재활용 활성화 지원
4.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이행을 위한 협력 및 지원
5. 시민 대상 이차전지 폐기물의 분리배출·화재예방 관련 교육·홍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리튬이온전지 등 이차전지를 내장한 소형 전자제품의 사용 증가로 인해 화재·폭발 등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수거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는 미비한 실정임
- 특히 생활계유해폐기물 중 이차전지 폐기물은 시민 생활공간과 밀접하게 배출되며, 잘못된 배출과 관리 부실로 인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체계적인 수거 및 재활용 시스템 마련이 시급함
- 이에 따라 서울시가 시민 안전과 자원순환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이차전지 폐기물의 전용 수거함 설치, 정기적 수거 및 재활용 체계 운영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이 이차전지 및 이차전지가 포함된 폐전기·전자제품의 수거 및 재활용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7조의2 신설)
- 나. 공동주택, 공공청사 등 시민 생활공간에 불연성 재질의 전용 안심수거함 설치 추진(제7조의2제1호)
- 다. 이차전지 폐기물의 정기적인 수거·운반·보관·재활용 체계 설계 및 운영·지원(제7조의2제2호)
- 라. 전문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해 폐기물 처리의 안전성과 재활용 활성화 도모(제7조의2제3호)
- 마.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이행을 위한 협력 및 행정적 지원(제7조의2제4호)
- 바. 시민 대상 분리배출 및 화재예방 교육·홍보를 통해 안전의식 및 참여도 제고(제7조의2제5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9823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피학대동물”이란 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을 말한다.

제16조제2항 중 “관련정보”를 “관련 정보”로 한다.

제25조의2제4항 중 “서울특별시에”를 “시에”로 한다.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로 하고, 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실태조사) 시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피학대동물, 사육포기 동물 등의 기본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동물보호정보의 활용) 시장은 동물의 보호 또는 동물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동물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에 대하여 정보활용의 목적과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기재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필요한 시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피학대동물, 사육포기 동물 등의 기본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동물의 보호 또는 동물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상위법에 따라 요청하도록 규정함

2. 주요내용

- 가. “피학대동물” 정의 규정함(제2조제10호의2 신설)
- 나.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피학대동물, 사육포기 동물 등의 기본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규정함(제26조 신설)
- 다. 동물보호 또는 동물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요청하도록 규정함(제27조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9824호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
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폭염 · 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 · 한파에 따른 서울특별시민의 생명 · 건강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
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
3. “무더위 · 한파 쉼터”란 폭염 · 한파를 피해 일시적으로 쉬어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구청장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4. “폭염 · 한파 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5. “폭염 · 한파 저감시설”은 폭염 · 한파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로서 별표의 시설을 말한다.
6. “폭염 · 한파 취약지역”은 폭염 · 한파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피해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폭염 · 한파로부터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 ·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의무) ① 시민은 폭염 · 한파 특보가 발효된 경우 시와 자치구에서 제공하는 폭염 ·
한파 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의 폭염 · 한파 피해 예방 시책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폭염 · 한파 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 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
시 폭염 · 한파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한파 예측 및 피해 전망
2.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3. 폭염·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한파 쉼터의 현황 및 관리 방안
5. 폭염·한파 대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대책
6. 폭염·한파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대책
7.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대책
8. 그 밖에 폭염·한파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3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안전관리자문단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 및 법인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폭염·한파 취약지역 예방활동 등) 시장은 기상청의 폭염·한파 특보가 발효되면 폭염·한파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방 및 지도·점검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한파 정보의 신속 전파
2. 제8조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점검 실시
3. 재난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한파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재난도우미 운영) ① 시장은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위촉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한파 특보가 발효되면 폭염·한파 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무더위·한파 쉼터 및 폭염·한파 저감시설 안내 등 폭염·한파 대응을 위한 지원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한파 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녹화시설 설치
2. 선풍기, 온풍기 등 냉·난방 물품 보급
3. 무더위·한파 쉼터, 살수시설, 방풍시설 등 폭염·한파 회피·저감 시설 설치 사업
4. 온열질환 및 한랭질환 의료비 지급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무더위·한파 쉼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무더위·한파 쉼터의 냉·난방비 및 시설비

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 사업
2. 폭염·한파 대응 관련 기관에서 시행하는 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 등을 지원할 경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제12조(폭염·한파 안전교육 실시)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한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폭염 · 한파 저감시설(제2조제5호 관련)

폭염 · 한파 저감시설	정 의
지붕 차열도장 (쿨루프)	지붕 또는 옥상에 태양광선을 반사하는 도료를 시공하여 실내온도를 낮추는 것을 말한다.
안개형 냉각 또는 안개형 냉각수 시스템 (쿨링포그)	물을 안개처럼 분사하면서 미세 물분자의 기화를 이용하여 주위 온도를 낮추는 냉방장치를 말한다.
차열성 도로포장	배수성 아스콘 및 차열성 포장을 통하여 노면 온도를 저감시키는 도로포장 방법을 말한다.
그늘막 및 그늘목	도로변과 공공시설 등에 파라솔 등의 설치하거나 및 나무를 심어 무더운 햇볕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보도 나무그늘 만들기	여름철 도심 보행자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등나무터널과 같이 나무를 이용해 그늘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수경시설	분수나 호수·인공폭포 등이나, 벽면분수·생태 연못 등 물을 이용하여 만든 시설물 또는 조형물을 말한다.
방풍시설	버스 승강장 등에 방풍벽 및 출입문을 설치하여 찬 바람을 막아주는 한파 저감 구조물을 말한다.
온열의자	버스 승강장 등에 설치하여 겨울철 체온을 유지하거나 한파를 저감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그 밖의 시설	위 시설물 외에 폭염 · 한파대응을 위하여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을 말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기후변화로 인해 한파와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하고 급격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계절별 재난인 폭염 및 한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재난’에 폭염과 한파가 포함되어 있음을 근거로 한파에 대해서도 폭염과 동일한 수준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이는 계절성 재난인 폭염 및 한파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한파"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반영함(제2조제2호 등)
- 나. 시장의 책무에 한파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제3조)
- 다. 종합대책 수립에 한파를 포함하고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제5조 및 6조)
- 라. 재난도우미 운영에 한파 취약계층을 포함하고 관련 지원대책에 한파를 규정함(제8조 등)

◆ 서울특별시조례 제9825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미만의 사람, 65세 이상의” 를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으로, “1인” 을 “1명” 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를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2의 운동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6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사람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 제목 중 “(제31조제1항 관련)” 을 “(제32조제1항 관련)” 으로 한다.

별표 6의 제목 중 “(제32조제1항 관련)” 을 “(제33조제1항 관련)”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 지]

[별표 2]

공원시설 이용료(제15조제1항 관련)

1. 운동시설

공원별	종 별		사용기준	금 액(원)		비 고
				체육경기	기타행사	
공통	잔디광장		1㎡당, 2시간	20~40		◦토, 공휴일은 이용료 30% 가산 ◦야간에는 이용료 30% 가산(토, 공휴일은 제외) ◦2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시간당 이용료의 50% 할인 ◦풋살장은 청소년 이용시 30% 할인, 어린이는 무료(이 경우 청소년 및 어린이의 팀 구성원 비율이 50% 이상일 때 적용)
	일반운동장(광장)			5~10	10~20	
	축구장	잔디	1회 2시간	120,000~156,000	300,000~390,000	
		인조잔디		55,000~82,500	110,000~143,000	
	풋살장	10인용		25,000~32,500		
		6인용		15,000~19,500		
	테니스장	실외	1면당, 2시간당	8,000~16,000		
		실내	1면당, 2시간당	25,000~37,500		
	파크골프장		어 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	4,000~6,000 3,000~4,000 2,000~3,000		◦평일 단체 이용시 30% 할인
	파크골프장 물품대여료		클럽(1회당, 개당)	1,000~2,000		
국공장			1일(3시간)	2,000~4,000		
			1개월	20,000~40,000		
서울대 공원	성인야구장	1일	70,000~91,000	200,000~260,000	◦토, 공휴일은 이용료 30% 가산 ◦야간에는 이용료 30% 가산(토, 공휴일은 제외) ◦야간 이용시 전기료 별도 납부 ◦전광판 이용시 전광판 이용료 별도 납부 ◦리틀야구장은 주간만 운영	
		3시간	42,000~54,600			
	리틀야구장	1일	35,000~46,000	100,000~130,000		
		3시간	21,000~27,300			

2. 휴양시설

공원별	종 별		사용기준	금 액(원)	비 고
공통	야영장 (캠핑장)	일반	야영장소 1회당	10,000~30,000	*입소일(1박2일 기준)이 공휴일이 아닌 월~목요일인 경우 20인(야영장소 5면) 이상 이용시 30% 할인
		글램핑	야영장소 1회당	90,000~120,000	

		캠프시설	개소당 (바비큐존 등)	5,000~20,000	
		전기료	전기 1회당	3,000~5,000	
	야영장(캠핑장) 물품대여료		야영텐트 1회당	5,000~20,000	
			1인용매트 1회당	1,000~1,500	
서울대 공원	서울대공원 캠핑장		어 른 1회당	2,000~4,000	
			청소년 1회당	1,500~3,000	
			어린이 1회당	1,000~2,000	

3. 교양시설

공원별	종 별	사용기준	금 액(원)	비 고
공통	강의실	1㎡당, 1시간당	200~300	- 회의실 등 강의실과 유사한 형태나 용도를 가진 시설 포함 - 부대시설 및 장비 이용료는 별도 산정 - 야간은 주간 이용료의 100% 가산 2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시간당 이용료의 50% 할인 - 공원이용 활성화 및 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음
	공연장 (복합문화공간 포함)	1㎡당, 1시간당	100~200	- 일(8시간) 단위 계산 - 야간은 주간 이용료의 30% 가산 - 부대시설 및 장비 이용료는 별도 산정 - 실내공간에 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옥상공간을 포함한다. - 다음 사항의 경우는 적용을 제외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별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개정 시행일 기준에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된 경우에는 협약기한까지 적용 -국가시설로 시설 관련법 등 별도 규정에 의해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
	야외무대	2시간당	100,000~150,000	
	청소년 체험의 숲	어 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	8,000~12,000 5,000~8,000 3,000~5,000	평일 단체 이용시 30% 할인

4. 기타

공원별	종 별	사용기준	금 액(원)	비 고
공통	사진·영상 촬영녹화	최초 1시간 초과시간당	13,000~19,500 6,500~13,000	영리행위에 한함. 다만, 홍보 및 마케팅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
	공원이용 프로그램참가비	1회당(1일당)	1,000~20,000	
	입장권 발매행사	입장권을 발매하는 유료행사	입장권 발매총액의 10~15%	- 시장홍보 및 공원이용 활성화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음 - 장소 이용료, 점용료는 별도 징수

남산 공원	차량통행료	승합자동차 (16인승 이상)	3,000~6,000	순환버스·시티투어버스·긴급 및 통행허가차량·장애인콜 택시·장애인심부름센터차량은 무료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2,000~4,000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의 보훈 관계법령 관련 유공자들을 우대하고, 경로자 우대 및 사회적 취약계층 배려 측면에서 도시공원 내 운동시설(체육시설) 이용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주요내용

- 가. 국가유공자 등의 보훈관계 법령 대상자, 영유아 및 노인,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100분의 50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2의 운동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제3항 신설)
- 나. 별표 2 제1호 “체육시설”을 “운동시설”로 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함(별표 2)
- 다. 별표 5 및 별표 6의 제목을 수정함(별표 5, 별표 6)

◆ 서울특별시조례 제9826호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은 화재 확산 위험을 고려하여 가연성·인화성 물질 및 발전기실·전기실 등으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한 위치에 설치
6.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은 피난시설(직통계단, 비상구 등)과 직접 면하지 않도록 설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 중 발생하는 화재 위험이 사회적으로 주목되고 있으며, 특히 지하주차장 등 밀폐된 공간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은 화재 발생 시 열기와 연기의 수평 확산으로 인해 대피 및 초기 소방 대응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이격거리 확보 등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관계인에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시 가연성·인화성 물질 및 발전기실·전기실 등과의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권고함(제8조제5호 신설)
- 나. 관계인에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시 피난시설(직통계단, 비상구 등)과 직접 면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을 권고함(제8조제6호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9827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후원하는 행사로서 한강”을 “한강”으로, “관련된”을 “관련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후원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제17호 및 제1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설치·운영하거나 시범적”을 “시범적”으로 한다.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0. 6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를 제시한 경우
1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15.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한 교육기관의 장이 추천하여 사전 승인된 경우(다만, 참여인원은 50명 이하로 한정)
1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으로서 해당 시설의 장이 신청하여 사전 승인된 경우(다만, 참여인원은 50명 이하로 한정)

제3장에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폐기물 감축 및 분리수거 홍보 등) ① 시장은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이 폐기물 발생 억제, 폐기물의 재활용 및 적정 처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기업 등과 협력하여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폐기물 감량, 분리배출, 재활용 확대 등에 기여한 시민 참여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 등을 마련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한강공원 내 이용료 감면 기준 조항을 서울시 타 조례와의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여 제도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한강공원 내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쾌적한 한강공원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용 시민을 대상으로 폐기물 감량, 분리배출, 재활용 확대 등을 위한 홍보와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환경의식을 높이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한강공원 이용문화를 확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한강 내 이용료 감면 기준에 대해 서울시 타 조례와 형평성에 부합하도록 조정함(제14조 2항 및 4항)
- 나. 재능 기부 또는 체육시설 관리에 기여한 개인·단체의 이용료 감면 조항 신설함(제14조 제2항제18호 신설)
- 다. 한강공원 이용시민에게 폐기물 발생 억제, 재활용 및 적정 처리 등에 대한 홍보, 교육, 캠페인 실시 근거를 신설함(제21조의2제1항 신설)
- 라. 관련 기관, 단체, 기업 등과 협력하여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의2제2항 신설)
- 마. 폐기물 감량, 분리배출, 재활용 확대 등에 기여한 시민 참여 우수사례의 발굴·홍보 및 인센티브 제도 마련 근거를 신설함(제21조의2제3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9828호**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를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며, 서울특별시”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이란 관광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을 “이란”으로, “출자·출 연하여”를 “출자·출연하여 관광산업 발전을 목적으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촉진하기 위한”을 “촉진할 수 있는”으로, “노력한다”를 “노력하여야 한 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역사·문화자원과 연계된 보행거리를 중심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동하며 관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6조제2항제6호 중 “여건개선”을 “여건 개선”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관광발전”을 “관광 발전”으로, “심사하거나”를 “심사하는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증진 및 관광자원 개발 등”을 “증진, 관광자원 개발 및 보행관광 활성화 등”으로 한다.

제8조를 제8조의2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관광특구 시설기준) 법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의 시설 및 숙박시설 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9조제3항 중 “다음연도”를 “다음 연도”로 한다.

제15조제1항제7호 중 “관광 상품”을 “관광상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유 재산”을 “공유재산”으로, “30이내”를 “30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공유 재산”을 “공유재산”으로 한다.

제16조의3제2항 중 “등과 관련”을 “등에 관하여”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광특구 지정요건 중 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관광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별표]

서울특별시 관광특구 시설요건 세부기준(제8조 관련)

시설 구분	종류	구비기준
1. 공공편의시설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공영주차장	가. 각 시설이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충분할 것 나. 공중화장실 중 유료화장실은 별도로 표기할 것 다. 개방화장실은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만 포함
2. 관광안내시설	관광안내소, 관광지 표지판	가. 각 시설이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충분할 것 나. 관광안내소 중 외국인통역 안내소는 별도로 표기할 것
3. 숙박시설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휴양콘도미니엄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관광숙박시설이 한 종류 이상일 것
4. 휴양·오락시설	민속촌,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온천장, 수영장,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 산림휴양시설, 박물관, 미술관, 야영장, 관광유람선, 한옥체험시설, 종합유원시설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관광객이용시설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유원시설이 한 종류 이상일 것
5.接客시설	관광공연장, 관광유흥음식점, 관광극장유흥업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관광식당, 관광지원서비스시설, 국제회의시설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관광객이용시설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관광 편의시설로서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충분할 것
6. 상가시설	기념품판매점, 백화점, 전통시장, 면세점, 대형마트 등 관광객이 이용하는 상가시설	하나 이상일 것

<비고>

위 표의 시설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통합제공시스템이나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시스템,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역사·문화자원과 연계된 보행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책무 및 지원 규정을 추가하여, 서울의 정체성과 특성이 반영된 보행관광의 기반을 조성하고 보행자의 접근성 및 안전성을 향상 시키고자 함
- 상위법령인 「관광진흥법」의 위임에 따라 서울시의 특성과 관광 여건을 반영하여 관광특구의 지정 요건 중 시설 기준을 신설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분하여 규정함(제1조)
- 나. 보행관광의 기반 체계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4조제4항 신설)
- 다. 보행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가하여 규정함(제7조제2항)
- 라. 관광특구 지정요건 중 관광시설 기준에 서울시 관광 여건을 반영하여 규정함(제8조 및 별표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9829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제2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스포츠데이의 안전하고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시설별 안전관리·운영요원 배치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9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시장이 스포츠데이로 지정한 날의 시립체육시설 이용자: 100분의 30 감액. 다만,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이 있는 경기장은 제외한다.

제10조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마. 시장이 스포츠데이로 지정한 날의 시립체육시설 이용자: 100분의 30 감액. 다만,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이 있는 경기장은 제외한다.

제10조제5호사목을 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사. 시장이 지정한 스포츠데이 관련 경기·행사. 다만,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이 있는 경기장은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장료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제3호, 제10조제1호마목 및 제10조제5호사목의 규정은 목동실내빙상장에 대하여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및 육성하고자 지정된 스포츠데이에 시립 체육시설 입장료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시민들에게 운동을 권장하고자 함
- 시민이 자발적이고 일상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현대인의 운동 부족과 만성질환 증가 문제를 예방·해소하고자 함
- 운동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춰 생활체육 저변을 넓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의료비 절감 및 건강 수명 연장을 기대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이 스포츠데이의 안전하고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설별 안전관리, 운영요원 배치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수립·시행할 수 있게 함
- 나. 시장이 스포츠데일로 지정한 날의 시립체육시설 이용료 및 전용사용료의 100의 30을 감액

◆ 서울특별시조례 제9830호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치매관리법」 제3조”를 “「치매관리법」 제16조의2”로, “치매센터”를 “광역치매센터”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치매센터”를 “광역치매센터”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치매센터 위탁기관”을 “광역치매센터 수탁기관”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치매센터”를 “광역치매센터”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재산(이하 “수탁재산”이라 한다)”을 “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광역치매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광역치매센터의 장은 수탁기관의 직위와 겸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주 2일(16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위탁받아 운영 중인 광역치매센터의 장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치매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광역치매센터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
-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결과를 반영하여 보완

2. 주요내용

- 가. 위탁의 취소 시 수탁기관이 사업과 관련하여 자비로 구입한 비품·장비는 수탁재산으로 보며, 다만 사전 협의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제8조)
- 나. 광역치매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광역치매센터의 장은 위탁받은 기관의 직위와 겸직할 수 있도록 조문을 변경(제9조)
- 다. 그 밖의 자구 수정

◆ 서울특별시조례 제9831호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를 “「환경보건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알권리”란 시민이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자신과 가족, 이웃 및 동료의 건강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위험 상태를 확인하거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결정할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이해하며 의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4조의 제목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보건과 화학물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제3항 중 “시와”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종합계획”을 ““종합계획”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의 특성을 검토하여 5년마다”를 “시의 특성을 검토하여 법 제6조의2에 따라”로, ““지역계획(으로 한다)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를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법 제7조제3항에 따라”를 “시의 환경계획 수립 시”로, “시의 환경계획에 포함시켜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로 한다.

제11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 또는 제12조”를 각각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를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2”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또는 제12조”를 각각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제1항또는 제12조”를 “제1항”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중 “법 제15조제1항·제2항 및 법 제17조”를 “법 제1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6조제3항 중 “법 24조”를 “법 제24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24조”를 “제28조”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를 “위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관리계획”을 “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한다”를 “위촉한다.”로, 같은 항 제1호 중 “종사자, 법률 지식을 갖춘 사람”을 “종사자 또는 법률 전문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민건강국장, 환경기획관”을 “시 시민건강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 기후환경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간사1명”을 “간사 1명”으로, “부서장으로 하며 서기는 담당팀장이 된다”를 “부서장이 맡고 서기는 담당 팀장이 맡는다”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2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에 따라 회의록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30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계획”을 “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2조”를 “제16조”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중 “법 제24조의2”를 “법 제24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5조제3항”을 “제29조제3항”으로 한다.

조례 제6761호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환경분쟁 조정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가 환경분쟁조정피해 구제위원회로 이관되어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환경보건위원회 당연직 위원 직위 소멸로 인해 표현을 변경하는 등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건강영향조사의 청원 삭제, 연관 조문 현행화(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9조)
- 나. 위원회 당연직 위원 변경(제20조제3항제2호)
- 다. 법규 관계를 고려한 인용 방식 간소화(제2조, 제4조, 제6~7조)
- 라. 위원의 해촉 조문 현행화(제23조)
- 마. 인용 조문 현행화(제17조, 제28조, 제30조)
- 바. 위원회 존속기한 명시(제26조의2)

◆ 서울특별시조례 제9832호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 을 “2030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기금의 전출) ① 시장은 기금을 제6조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기금을 전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출은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위원은 해촉,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다.

제1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하수도사업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운용 중인 회전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동 기금의 전출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직무대행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및 수당지급 규정에 대해 관련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의 존속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제3조)
- 나.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전출 근거규정 신설(제6조의2)
- 다. 위원회 직무대행 규정 신설 등 위원회 관련 조항 정비(제12조, 제13조, 제15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833호

서울특별시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에 따라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대기환경의 보전 및 개선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공해운행지역”이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대기관리권역 중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대기환경의 보전 및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란 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을 말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4. “저공해엔진”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조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엔진을 말한다.

제3조(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 대기오염물질 노출 인구현황, 교통량 등 지역적·산업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었거나 지정 사유가 소멸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서울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당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29조의2제7항에 따라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사실을 서울특별시보에 고시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저공해운행지역의 위치

2.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일시
3.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변경·해제 사유
4. 저공해운행지역 내 자동차 운행 제한 기간 및 시간
5. 저공해운행지역 내 운행 제한 대상 자동차의 종류

제4조(저공해운행지역의 자동차 운행) ① 시장은 법 제29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하고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
 2.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4등급으로 사용연료가 경유인 자동차(다만, 저공해운행지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한정하여 운행을 제외한다)
-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30조의2에 따른 자동차 및 다음 각 호의 자동차는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
2.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자동차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유하는 자동차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나.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제5조(운행 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저공해운행지역 내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해 단속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단속공무원을 임명하여 운행 제한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② 단속공무원은 단속업무 수행 중임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① 시장은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자동차 소유자가 제4조에 따른 운행 허용 자동차임을 증명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사전통지·부과·징수 및 이의제기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 신설에 따라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대기환경의 보전 및 개선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제1조, 제2조)
- 나.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제3조)
 -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변경·해제 절차, 의견수렴 대상 및 고시 방법 등
- 다. 저공해운행지역의 자동차 운행에 관한 사항(제4조)
 - 저공해운행지역 운행제한 및 제외대상 자동차
- 라.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에 관한 사항(제5조, 제6조)
 -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과태료 부과 등

◆ 서울특별시조례 제9834호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2025년 9월 29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인공지능 사회 구현을 통해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시민의 삶의 질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3조제1호의 인공지능을 말한다.
2. “인공지능윤리”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시민의 권익과 생명·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제공 및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말한다.
3. “인공지능사회”란 인공지능을 통하여 산업·경제, 사회·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시민의 행복과 공익 창출을 지향하는 윤리적 인공지능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인식개선, 건전한 이용에 대한 교육, 자율규제의 실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윤리 기준의 확산 등 윤리적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기술, 문화, 법제도 등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가이드라인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각각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6조에 따른 인공지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 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공지능윤리의 준수·확산을 위한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관련 연구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가이드라인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일반윤리학 관련 학식과 연구실적
 2. 인공지능 산업윤리 관련 현장 경험과 학식
 3. 인공지능 관련 행정적·법률적·기술적 전문지식
 - ③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위원회(이하 “인공지능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신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⑤ 그 밖에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위원회를 준용한다.
- 제7조(가이드라인) 시장은 인공지능 기술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을 보장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윤리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 가이드라인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8조(행정지원 등) 시장은 윤리적 인공지능사회 기반 조성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과 인공지능윤리 확산 등을 위하여 정부 부처,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교, 기업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 제7조를 삭제한다.
- 제8조제2항제2호 중 “공익성 및 윤리성”을 “공익성”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의 발전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요소로 의료 · 복지 · 교육 등 시민의 일상생활을 비롯해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음.
- 그러나 급속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 기본권 침해, 편견과 허위 정보의 확산, 디지털 격차 심화 등 여러 위험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이로 인해 기술 혜택의 불균형과 사회적 신뢰 저하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면서도 공정성 · 투명성 · 책임성을 보장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윤리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관련 사항을 규정함(제5조)
- 나.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함(제6조)
- 다.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 가이드라인 수립을 규정함(제7조)
- 라. 행정지원 관련 사항을 규정함(제8조)
- 마. 협력체계 구축 관련 사항을 규정함(제9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835호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의 성장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3조제1호의 인공지능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3조제2호의 인공지능기술을 말한다.
3.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이하 “인공지능제품”이라 한다)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이하 “인공지능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인공지능사업자”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개인 및 공공기관등을 말한다.

가. 인공지능개발사업자: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자

나. 인공지능이용사업자: 가목의 사업자가 제공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산업을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차기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인공지능산업 발전위원회)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위원회에 인공지능 산업 분과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해당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운영, 위원들의 제척·기피·회피, 수당 등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인공지능산업 관련 업무 담당 실·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인공지능 관련 기업, 학계,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또는 인공지능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인공지능기술 도입·활용 지원) ① 시장은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개발 지원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2.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활용하고자 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컨설팅 지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중소기업 등”이라 한다)의 임직원에게 대한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 관련 교육 지원
4. 중소기업등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에 사용되는 자금의 지원
5. 그 밖에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2. 인공지능산업 관련 유망기업 및 연구소의 유치·육성
3. 인공지능 인재양성 및 창업 지원
4. 인공지능 관련 산·학·연 협력 지원
5. 인공지능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 지원
6. 인공지능사업자의 국외 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
7.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
8. 인공지능 관련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9. 인공지능사업자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 인공지능사업자 육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산업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정부 부처, 자치구, 공공기관,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 등의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표창)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국내 인공지능 산업은 기술 수요와 공급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시장 규모가 2018년 약 1조 원에서 2025년 약 10.5조 원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인공지능 산업은 AI소프트웨어, AI알고리즘, AI데이터, AI플랫폼 등 다양한 영역의 집합체인 만큼 산업 육성에 세부적인 정책지원이 중요함.
- 특히 서울시는 ‘서울AI허브’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인공지능산업의 주축이 되기에 산업 발전의 책임을 가질 필요가 있음에 따라 인공지능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인공지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 목적을 규정함(제1조).
- 나.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함(제3조 및 제5조).
- 다. 인공지능산업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부터 제9조까지).
- 라.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을 위한 지원을 규정함(제10조).
- 마. 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 추진과 실태조사를 규정함(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 바.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무위탁을 규정함(제13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836호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입법·법률고문은 소송수행 및 자문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으나, 연임횟수는 3회로 제한한다.

③ 입법·법률고문의 임기가 완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언론홍보실장, 각 담당관”을 “각 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및 제2항 중 “법제담당관”을 각각 “법제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17개 광역 시·도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 25.5.26.) 사항을 반영해 의회의 입법·법률 고문의 임기 연임 제한 규정 미비에 따른 일감 몰아주기·민관유착에 따른 부패발생·진입장벽 형성 우려를 해소하고자 함
- 그밖에,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조직 개편(’ 25.7.4.)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사항(언론홍보실→언론홍보과, 법제담당관→법제과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와 입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담당관 등 부서 명칭 변경사항을 개정함(제2조).
- 나. 입법·법률고문 임기의 연임제한(연임 가능 횟수 3회 제한) 규정을 마련함(제6조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837호**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개정 등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개정 등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내 신규 직위 신설과 부서 명칭 변경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입법 효율성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의회 공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의정담당관실”을 “운영지원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 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의정담당관”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의정담당관”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공무국외출장”을 “의정국장, 공무국외출장”으로, “실·담당관, 수석전문위원”을 “그 외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현장민원담당관”을 “현장민원과장”으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재정분석담당관”을 “재정분석과장”으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사담당관”을 “의사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재정분석담당관”을 “재정분석과”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법제담당관”을 “법제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법제담당관이” 를 “법제과가” 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법제담당관과” 를 “법제과와” 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제담당관” 을 “법제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제담당관은” 을 “법제과는” 으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법제담당관” 을 “법제과장” 으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언론홍보실장” 을 “언론홍보과장” 으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실·담당관” 을 “과”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5.5.20., 공포 및 시행) 사항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내 신규 직위(3급) 신설과, 이를 반영한 하부조직 개편(' 25.7.4.)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사항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와 입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의정국장 산하 하부조직 명칭 '담당관' , '실' → '과'로 일괄 조정) 변경 사항을 반영함(제2조부터 제12조까지).

◆ 서울특별시조례 제9838호

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학술 논문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학술 논문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학술 논문 공모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입법 및 정책 개발에 반영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회회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서울특별시의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공모전”이란 서울특별시의회가 주관하여 특정 주제에 관한 청년의 학술 논문을 공개 모집하고 심사·시상하는 대회를 말한다.
3. “제안자”란 공모전에 참여하여 학술 논문을 제출한 청년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의회회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에 대한 청년의 관심을 높이고 공모전에 다양한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의장은 공모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공모전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4조(공모전의 개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청년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다.

1. 공모전 주제 및 내용
2. 응모 기간 및 심사 기간 등 공모전 실시 기간
3. 응모 방법
4. 심사 기준
5. 시상 내역
6. 기타 공모전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의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비롯한 공모전에 관한 세부 사항을 의회 누리집,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널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응모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기간 동안 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기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공모전의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공모 주제와의 적합성
2. 연구의 독창성 및 창의성
3. 정책적 기여도 및 실용성
4. 논지 전개의 논리성 및 완결성
5. 연구방법의 타당성

제6조(심사위원회) ① 의장은 공모전에 제출된 학술 논문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의 회 청년 학술 논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공모전 실시 기간 중 구성하고 공모전에 대한 심사 등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1. 공모전 주제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모전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2. 응모작의 심사 및 당선작 후보 선정에 관한 사항

3. 표절 등 부정행위의 검증 및 판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모전 심사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논문의 제안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논문의 제안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논문에 관하여 증언,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수행한 경우

4.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안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당선작 결정 및 공고) 의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선작을 최종적으로 결정하

고 그 결과를 의회 누리집,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

제10조(시상) 의장은 당선작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장과 시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당선작의 활용) 의장은 당선작이 서울특별시의회의 입법 및 정책 개발에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및 그 소속기관 등과 내용을 공유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영역에 대한 연구·분석과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이 필수적임. 특히 청년의 참여를 통한 정책적 제안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지방의회 전문성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의회는 매년 청년 학술 논문 공모전을 운영하며 청년 정책 제안을 공식적으로 수렴하고 있으나, 사업 수행의 근거 조례가 없는 상황임.
- 이에 청년 학술 논문 공모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 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 나. 공모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의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다. 공모전의 개최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 라. 공모전의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 마. 공모전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내지 제8조)
- 바. 당선작의 결정과 공고, 시상 및 당선작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내지 제11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839호

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결혼준비대행업의 건전한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결혼준비대행업”이란 예식장 대관, 예복 임대, 웨딩촬영, 메이크업 및 헤어 연출 등 결혼에 필요한 준비 과정을 일정 기획, 서비스 연계 또는 대행의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표준계약서”란 결혼준비 관련 서비스 이용 시 공정한 계약 체결과 분쟁 예방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제정한 계약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결혼준비대행업의 건전한 운영과 소비자 보호, 공정한 거래질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결혼준비대행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결혼준비대행업 관리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결혼준비대행업의 운영 실태, 거래 관행 및 관련 제도 개선
3. 소비자 보호 및 피해 예방, 정보제공 기준 정립, 계약 절차 개선
4. 거래 기준의 표준화, 표준계약서의 활용 및 자율규제 기반 조성
5. 그 밖에 결혼준비대행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 추진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소비자 보호) 시장은 결혼준비대행업의 운영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해지 조건, 분쟁 사례 등에 대한 정보제공 체계 마련
2.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표준계약서 안내 및 활용 촉진
3. 민원 접수 및 분쟁 해결 절차 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결혼준비대행업의 건전한 운영과 공정한 거래질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표준계약서 활용 촉진 및 거래 절차의 이해도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2. 자율규제 확산과 민간 차원의 자정 노력 유도를 위한 지원 사업

3.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상담·안내 사업

4. 결혼준비대행업의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을 위한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 사업

5. 그 밖에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5조에 따른 소비자 보호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현황 및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자치구, 관계 행정 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최근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행업체를 통한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정보 비대칭, 계약 절차 불투명, 환불·해지 기준 부재 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또한, 결혼준비대행업은 여러 서비스를 패키지 형태로 연계·제공하는 특성상 분쟁 발생 시 소비자 대응이 어려우며, 시장의 신뢰성 저하와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고착화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의 정의,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에 관하여 규정함(제1조~제4조)
- 나.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안내, 분쟁 예방, 민원 처리 등 소비자 보호 조치에 관하여 규정함(제5조)
- 다. 결혼준비대행업의 건전한 운영과 공정한 거래질서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제6조)
- 라. 실태조사와 유관 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제7조~제8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840호

서울특별시 혁신경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혁신경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경제에 대한 중장기적 미래 계획을 제시하고, 지역경제 주체 간의 협력과 소통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혁신경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혁신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자문한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하는 중장기 경제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와 관련하여 시·기업지원 관련 공공기관·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유관기관 간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의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경제실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실장, 민생노동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기업지원 관련 공공기관·대기업·중소기업 및 관련 단체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사람
3.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사람
4. 경영, 경제, 통계 등 경제산업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④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고, 위원의 임기는 회의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회의는 회의록 등을 통해 충실히 기록하여야 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하거나 정책집행 과정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제정책과장이 된다.

제7조(의안의 제출) ① 시장은 회의 개최 20일 전까지 시 및 기업지원 관련 공공기관, 기업·소상공인 및 관련 단체 및 각 위원에게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이 있을 경우에는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안전의 배부) 위원회에 부칠 안전은 회의 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9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외를 출장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시는 개별산업 및 경제민주화·공정경제·사회적경제 등에 대한 지원 근거 조례가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 및 지역경제 현안을 협의하는 지역경제협의회 관련 조례가 시행되고 있음.
- 그러나 서울시, 기업지원기관, 대기업 및 중소기업 등의 지역경제 주체 간의 협력 및 소통 촉진, 서울 경제에 대한 중장기적 미래계획 제시 등을 위한 기능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지역경제 주체간 협력 및 서울 경제의 중장기적 미래계획을 심의·자문하는 서울특별시 혁신경제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혁신경제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함(제2조)
- 나. 혁신경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함(제3조)
- 다. 의안의 제출, 안건의 배부 등을 규정함(제7조·제8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841 호

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시민도시 용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시민도시 용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제1조(「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을 “문화도시종합계획”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을 “문화도시종합계획”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 중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을 “문화도시종합계획”으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문화도시위원회”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를 “문화도시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상 “문화시민도시”라는 용어가 “문화도시”로 개정되었음에도, 이 조례를 인용한 다른 조례들에서 개정된 용어를 반영하고 있지 않음.
- 개정된 용어가 반영되지 않은 조례는 「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로 총 5개임.
- 이에 조례 용어상의 혼란을 막고 조례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해 위 5개 조례상의 “문화시민도시”를 “문화도시”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상에 쓰인 “문화시민도시”를 “문화도시”로 변경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9842호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사회적응”을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정착과정에서의 정서·심리적 상담 및 지원
3. 직업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직장 적응 및 장기근속지원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7조의5제2항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관련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모범이 되는 사업주가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연간 평균 3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할 것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5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할 것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 내 북한이탈주민은 약 6천여 명(전국 거주 인원 중 20.3%)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더욱 중요한 상황임.
-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정서 및 심리적 상담 등 지원 분야를 세분화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고용 촉진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우선 구매 제도 관련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원 사업의 범위를 세분화함(제4조제1항).
- 나. 우선 구매에 관한 근거 조항을 정비함(제12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843호

서울특별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의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여 서울특별시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예술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노동과 복지에 있어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술을 검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예술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예술지원사업의 결정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예술인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거나 시행하는 경우 정책 결정 과정에 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을 금지·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 관련 제도 개선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③ 지원계획은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10호 각 목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2. 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3.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술인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예술인권리영향평가)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예술지원사업을 시행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해당 예술지원사업이 예술인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예술인보호책임자의 지정)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예술지원사업과 관련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불만처리와 예술인권리영향평가 업무를 총괄하는 예술인보호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법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우리나라 예술 관련 법령 체계는 장르 중심의 지원 근거와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집
중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는 부족함이
있었음
-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2021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 함께 필요하다는 예술계의 요구가 있는 상황임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예술인의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의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를 보
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여 서울특별시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본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 나. 서울특별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서울특별시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다. 서울특별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 라. 서울특별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제5조)
- 마.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술인권리영향평가 및 예술인보
호책임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및 제7조)
- 바. 재정지원에 대해 규정함(제8조)
- 사. 포상에 대해 규정함(제9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844호

서울특별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활동 및 정책에 필요한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 활동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론조사”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관하여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여론조사 과정 및 결과 공표의 신뢰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제 발굴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회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여론조사 범위)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요청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 또는 교육청의 주요 시책이나 시정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의정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6조(제외 대상)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하지 아니한다.

1.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개별 또는 지역구 의정 성과에 대한 주민 평가에 관한 사항
3. 선거 후보자의 지지율 조사 등 정당의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여론조사를 할 수 없는 사항

제7조(여론조사 의뢰 및 시기) 위원회 및 사무처는 조사개시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여론조사 의뢰서를 작성하여 사무처 여론조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여론조사 선정)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제7조에 따라 의뢰된 여론조사를 선정한다.

1. 여론조사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여론조사의 방식 및 용역비 등의 적정성

3. 여론조사 활용 가능성 등

제9조(여론조사 방법)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적절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1. 전화(유선전화, 무선전화, 유·무선 전화 병행), 대인 또는 집단 면접조사
2.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web)조사]
3.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조사
4. 우편조사
5. 그 밖에 의장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조사 방법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여론조사 시 질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편향적인 문장이나 어휘
2. 특정 사항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3. 응답자에 대한 특정 응답 강요 및 유도

제10조(활용실적 제출) 여론조사를 실시한 위원회 및 사무처는 여론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결과 및 결과 공개여부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여론조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여론조사 활용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처 여론조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여론조사 결과의 공개) ① 의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를 의회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

1. 여론조사 결과가 부적절하거나 입법활동 지원, 정책연구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여론조사 결과 공개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정치적인 파장 또는 시민 갈등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 결과 공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위원회(의원명) 및 사무처 부서명, 여론조사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명
2. 조사기간, 방법, 질문내용 등 여론조사와 관련된 사항

제12조(예산지원) 의장은 여론조사에 수반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와 여론조사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별지 제1호서식]

여론조사 의뢰서

번 호			
제 목			
위원회부서명		조사방법	
조사대상 (모집단)		조사규모 (표본수)	
조사시기		활용시기	
조사목적			
주 요 조사내용			
조사결과 활용계획			
조사결과 언론보도 계획			
기 타			

(신청 의원명: , 담당자:)

위와 같이 우리 위원회 또는 부서 여론조사 의뢰서를 제출함.

위원장 또는 부서장 0 0 0(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의회 속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별지 제2호서식]

여론조사 활용실적 보고서

번 호						
제 목						
위원회부서명				조사방법		
조사대상				조사규모 (표본 수)		
조사기간				조사기관		
조사목적						
주 요 조사결과 (요 약)						
조사결과 활용실적	조례 재·개정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언론보도	기타	공개여부
향후 활용 계획						
기 타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시민참여를 도모하고자, 의정백서, 홍보책자, 월간서울의회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해 자료를 배포하고 있으나, 실제 시민의 의견이 전제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부재
- 이에 향후 주요 정책 결정 과정 등에서 시민의 의견 수렴을 기반으로 체계적 홍보 체계 마련 구축 및 향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의정활동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 (제1조 및 제2조)
- 나. 의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제3조)
- 다. 여론조사 범위 및 제외 대상에 대해 규정함(제5조 및 제6조)
- 라. 여론조사 의뢰 및 시기에 대해 규정함(제7조)
- 마. 여론조사 선정에 대해 규정함(제8조)
- 바. 여론조사 방법에 대해 규정함(제9조)
- 사. 활용실적 제출에 대해 규정함(제10조)
- 아. 여론조사 결과의 공개에 대해 규정함(제11조)
- 자. 예산지원에 대해 규정함(제12조)
- 차. 비밀준수에 대해 규정함(제13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845호

서울특별시의회와 국외 지방의회 간 상호결연 등 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와 국외 지방의회 간 상호결연 등 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와 국외 지방의회 간 상호결연 등 교류협력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류협력”이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다양한 국외 지방의회와 경제·사회·문화·관광 등 각종 분야에서 교류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의회의 국제적 위상 제고 및 국외 지방의회와의 상호협력과 신뢰를 증진시키는 각종 협력활동을 말한다.
2. “상호결연”이란 의회와 국외 지방의회 간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의정활동 전반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결한 협약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외 지방의회와의 교류 협력을 추진할 때에는 의정발전 및 지역발전 등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시민에게 홍보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호결연 체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상호결연의 원칙 등) ① 의장은 의회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외 지방의회와 상호결연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상호결연 체결 시에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의회와 대상 국외 지방의회 간 상호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의회와 대상 국외 지방의회 간 국제적 위상의 유사성
2. 산업,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상호 보완성과 발전 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협력을 통해 기대되는 실익
5. 역사적·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협력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협력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③ 상호결연을 통한 교류협력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의회 발전 방향에 대한 상호 정보 제공
2. 의정활동 관련 정보교류
3. 상호결연 체결 의회 간 초청 및 방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현안사항 및 국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상호결연의 체결) ① 상호결연의 체결은 의장과 국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갖고 공동 관심 사항 및 교류계획 등에 관한 합의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호결연 체결 시에는 그 문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의장은 상호결연 체결 및 상호 방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상호결연의 취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상호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1. 해당 국외 지방의회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교류 단절로 상호결연의 실효성이 없어진 경우
3. 그밖에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시행규칙) 그 밖에 상호결연 등 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의회가 국외 지방의회 등과 체결한 상호결연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기존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상 불분명하던 상호결연 체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그 근거와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시의회의 상호연결 등 교류협력 활동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 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의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제4조)
- 라. 상호결연의 원칙 및 상호결연을 통한 교류협력 내용을 규정함(제5조)
- 마. 상호결연 체결 절차를 규정함(제6조)
- 바. 상호결연의 취소가 필요한 경우 그 절차를 규정함(제7조)
- 사. 상호결연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8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846호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우선입장제)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행사 등에 임신부 및 유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 중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과 그 동반가족 또는 보호자를 우선입장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우선입장하게 할 경우 대상자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우선입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24년 기준, 서울시 합계출산율이 0.58명으로서 혼인의 감소 및 혼인 후 사회적 환경 및 각종 여건 등의 사유로 출산 또한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다자녀가정의 중요성과 다자녀 양육가정 지원의 필요성 절실
- 특히, ‘양육친화적 문화 조성’에 있어, 다자녀 가족의 일환인 임신부 및 유아동의 축제, 행사 등의 접근성을 높이고, 아이키움 배려문화 확산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우선입장 제도’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여, 다자녀가정의 중요성과 지속적 지원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2. 주요내용

- 가. 임신부 및 유아동 등의 우선입장제에 대한 조항 신설(제7조의3)

◆ 서울특별시조례 제9847호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증진” 을 “증진 및 서울특별시의 국제적 위상 제고” 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민간” 을 “민간단체·법인, 대학 등”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인권, 평등 등 보편적 가치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문화교류 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조례에 ‘서울특별시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목적에 추가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 사업 범위에 대학을 포함하여, 서울형 국제문화교류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참여 주체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목적에 ‘서울특별시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추가하여 국제문화교류의 공공외교적 성격을 강화함(제1조)
- 나. 국제문화교류 진흥 사업 범위에 ‘대학’을 명시하여 참여 주체를 확대함(제6조제2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9848호**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안전분과위원회” 를 “안전분과위원회 및 보안분과위원회” 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등 안전운행 관련” 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안전운행, 공간정보 및 개인정보의 보호 관련” 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간정보 및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안계획서
 - 가. 공간정보 및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한 자체 보안 점검 및 대책에 관한 사항
 - 나. 공간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실태에 관한 사항

제12조제2항 중 “안전운행 검증” 을 “안전운행 및 보안검증” 으로 하고, “안전분과위원회” 를 “안전분과위원회 및 보안분과위원회” 로, “기술 및 안전운행능력” 을 “기술 및 안전운행능력, 보안실태” 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기술 및 안전운행능력을” 을 “기술 및 안전운행능력, 보안실태 등을” 로 한다.

제2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의 확산과 대중교통수단 정착 지원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할 수 있다.

1. 법 제40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마친 자율주행자동차의 구매 비용
2. 구매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관제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
3. 기타 시장이 데이터 연계 및 자율주행시스템 성능개선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확대에 따라 공간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보안검증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이에 자율주행자동차를 이용한 여객탑승 기술실증 및 유상운송 허가, 한정운수면허 발급 시 보안검증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 분과로 “보안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함
- 또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과 연계하여 자율주행자동차(버스) 확산 및 대중교통수단 조기 정착 지원을 위해 여객운송사업자가 성능인증을 마친 자율주행자동차(버스) 구매 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의 분과로 보안분과위원회 신설(제10조제1항)
- 나. 제11조 운행 준수 관련 조항 중 기존에 정의했던 법령 외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추가(11조제1항)
- 다. 유상운송 허가 및 한정운수면허 발급 신청 시 보안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보안검증 사항 신설(제12조)
- 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과 연계하여 노선 여객운송사업자가 성능인증을 마친 자율주행자동차 구매 시 재정지원 근거 마련(제20조제2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9849호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이 종료되면 해산한다.

제4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⑤ 위원회의 임기는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해당 안전에 대한 심의·의결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안전 발생 시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

제4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9조 중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를 “시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는 인권종합계획 수립 및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의 대응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으나, 조례에 따라 계획 수립 주기가 3년 단위로 설정되어 있어 위원회의 상시 운영 필요성이 낮음.
- 실제로 최근 2년간 회의 개최 실적이 2023년 1회에 그쳐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위원회 해촉 관련 조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대체 가능하므로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를 비상설기구로 전환(제45조제1항)나. 위원 해촉 조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적용 가능하므로 삭제(현행 제46조제7항)
- 다. 안전 발생 시 시장이 위원회를 소집(제47조제2항)
- 라. 시장이 운영세칙을 정함(제49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850호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 운영세칙을 따르며,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민주시민교육 업무가 2021년부터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의 고유사무로 이관됨에 따라, 현재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는 실질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있음.
- 2023년과 2024년 동안 회의가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상설기구로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짐. 이에 따라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자문 필요성이 있을 때만 운영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법령의 탄력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를 비상설기구로 운영하도록 변경함(제8조제1항)
- 나. 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적용 가능하므로 삭제(현행 제9조 삭제)
- 다. 시장이 운영세칙을 정하도록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 후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851호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범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술 중 특허를 보유하고 있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1. 중단열 등 건물 단열에 관한 기술
2. 고효율 전기설비 및 기계설비에 관한 기술
3.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기술
4.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술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국토교통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2024년 12월 31일 확정 및 고시하였고, 제로에너지건축물 확대, 녹색건축 기술육성, 녹색건축 생태계 조성, 그린리모델링 확장이라는 4대 추진전략을 마련함.
- 이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하는바,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술 중 특허를 보유하고 있거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을 권장하도록 하여 시범사업에 관련 기술의 적극적 도입이 필요함.

2. 주요내용

- 가.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시 단열기술, 전기·기계설비,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술 중 특허를 보유하고 있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을 권장하도록 함(제9조제2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9852호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공공자전거 주차구역”이란 서울특별시가 설치·운영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자전거의 대여 및 반납을 위하여 지정된 물리적 공간을 말한다.

11. “개인형 이동장치 등”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전동킥보드 등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전동형 이동수단을 말하며,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공유형 이동수단도 포함한다.

제12조의2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시장은 공공자전거 주차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민간 공유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및 일반자전거 등이 해당 구역에 무단으로 주차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제7항에 따른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앱 안내, 현장 계도 활동 등을 포함한 질서유지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시장은 자전거 주차질서 확립 및 무단 주차 예방과 관련된 내용을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에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와 민간 공유자전거, 일반 자전거 등이 공공자전거 주차구역에 무단으로 주차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공공자전거의 정상적인 대여·반납이 어려워지고, 주차 질서가 훼손되며, 시민의 이용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현행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는 공공자전거 주차구역 내 질서 유지에 관한 행정적 조치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실질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 이에 따라 본 개정은, 공공자전거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행정적 조치, 안내·계도 등 실효성 있는 질서유지 방안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제도적 근거를 보완하고자 함.
-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자전거 주차구역의 질서 유지를 통해 운영 효율성과 시민 편의를 높이고, 자전거의 대중교통 연계 수단으로서의 역할과 신뢰도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공자전거 주차구역’ 및 ‘개인형 이동장치’ 정의를 신설하여 관련 개념의 법적 명확성을 확보함(제2조제7호 및 제11호 신설)
- 나. 공공자전거 주차구역 내 무단 주차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적 조치 근거를 신설하고, 안내판·앱 안내·현장 계도 등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질서유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제12조의2제7항 및 제8항신설)
- 다. 시민 대상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에 주차질서 및 무단 주차 예방 관련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시장의 교육 강화 책무를 명시함(제13조제7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9853호

서울특별시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법률상담, 소송 관련 법적 절차 지원 등 법적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아동복지시설 등에 입소한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친권자인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청소년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국가나 기관의 지원금을 동의 없이 인출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재산 갈취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금융피해 관련한 법률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 근거를 조례로써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법률상담, 소송 절차 등 법적 지원 규정 신설(제6조제1항제9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9854호

서울특별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 및 지역공동체 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3. “공공도서관”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4. “학교도서관”이란 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 및 지역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축적·제공·열람·대출
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협력 구축사업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작은도서관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작은도서관 진흥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작은도서관과 다른 공공도서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을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발전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설치 및 운영 지원)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조성 및 시설 개선을 위한 비용
2.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구입 등 운영비 및 인력 지원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교육비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5. 그 밖에 시장이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후원의 장려) 시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지역주민 참여 확산을 위한 활동 전개 등을 통하여 기업·단체 또는 개인의 후원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8조(중사자 교육) 시장은 작은도서관 중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과 다른 공공도서관 간의 도서관자료 및 업무 등의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과 다른 공공도서관 간에 도서 및 자료 등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법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작은도서관 진흥법」, 「독서문화진흥법」”을 “「독서문화진흥법」”으로 한다.

제4장(제28조 및 제29조)을 삭제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2025년 8월 「작은도서관 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작은 도서관 지원 책무가 강화되었으나, 서울시의 관련 조례는 제한적인 실정임
- 현재 서울시 내 작은도서관들이 지역별로 상이한 운영 체계와 지원 수준으로 인해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통일된 기준에 따른 체계적 지원이 필요함
- 특히 작은도서관이 단순한 도서 대출, 열람 기능을 넘어 지역주민의 문화진흥 및 공동체 문화 조성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불충분한 상황임
- 이에 작은도서관의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독서문화 진흥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시민의 생활친화적 도서관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또한 서울시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간 편차 없이 균등한 공공도서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마련 의무화(제3조)
- 나.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도서관자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역문화 진흥, 독서문화 향상, 공동체 문화 강화 등으로 확대 규정(제4조)
- 다. 시장이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연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존 도서관발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함(제5조)
- 라. 작은도서관 조성·운영,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6조)
- 마. 작은도서관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또는 지원 규정(제8조)
- 바.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공유시스템 운영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의무화(제9조)
- 사. 작은도서관 진흥에 이바지한 개인·단체 등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제10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855호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영유아 및 그 가족을 위한 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상담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주체가 기존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었음.
- 또한, 정밀진단에서 발달장애가 있거나 발달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영유아와 그 가족에게 발달장애 예방·치료에 관한 정보 제공, 양육 방법 안내 및 가족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음.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에 해당 내용의 기능을 추가하여, 발달장애가 있거나 그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에 대한 조기 개입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에 발달장애가 있거나 그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 및 그 가족을 위한 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상담지원을 추가함(제10조제3항제5호의2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9856호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10조 앞의 “제4장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삭제한다.

제18조 앞의 “제5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제5조 및 제6조로 한다.

제19조를 제22조로 하고, 제17조를 제19조로 하며, 제15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3조를 제15조로 하며, 제11조를 제13조로 하고, 제9조를 제11조로 하며, 제7조를 제9조로 하고, 제7조, 제8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추진계획의 협의·조정) 시장은 자치구의 지방추진계획이 시의 지방추진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상호 협의·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추진상황의 점검 등) ① 위원회는 최근 2년간의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과 사업자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시의 지속가능발전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 제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전략에 기초하여 환경적·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 앞의 “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등”을 삭제한다.

제5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등

제9조(중전의 제7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4조”를 “제16조”로 한다.

제8조 앞의 “제3장 지속가능성 평가”를 삭제한다.

제1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지속가능성 평가

제21조를 제24조로 하고, 제18조를 제21조로 하며, 제16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4조를 제16조

로 하며, 제12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0조를 제12조로 하며, 제8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0조(중전의 제8조)제2항 중 “제6조제2항”을 “제8조제1항”으로 하고, “포함하여”를
“포함하여 2년마다”로 한다.

제11조(중전의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가위원회와 시의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제12조(중전의 제10조) 제2항제2호 중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보급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추진계획”을 “추진계획 협의·조정 및”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
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책의견 제시

5. 제9조제5항에 따른 조례안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 통보

7. 지방보고서의 작성

8. 교육·홍보

제18조(중전의 제1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
례」 제9조를 따른다.

제20조를 제23조로 하고,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 및 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2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보칙

제24조(중전의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지속가능발전 실천 활동 지원) 시장은 기업 및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
실천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국제협력 등) ①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국제기구 등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및 표준화, 공동조사·연구 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국제협력을 도모하
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발도상국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는 등 개발도상
국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기대에 맞는 책무를 성실히 이
행하고 시의 외교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기구에서 제정하거나 도입하려는 지속가능발전과 관
련된 제도·정책에 관한 동향과 정보를 수집·조사·분석하여 관련 제도·정책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동향·정보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기업·시민들에게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기업과 시민들의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2022. 7. 5.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 등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서울특별시 지속 가능발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 및 이행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민과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4조)
- 나. 추진계획의 협의·조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7조)
- 다. 위원회가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장에게 송부하며, 시장은 그 결과를 서울시의회에 보고 및 국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제8조)
- 라. 시장이 지방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가위원회와 서울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제11조 제3항)
- 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심의·자문 사항을 법률에 따라 정비함(제12조제2항)
- 바.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관련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를 따르도록 규정함(제18조제4항)
- 사.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20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857호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의 개인정보 보호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며,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시”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를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각 부서의 분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별도로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을 분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해당 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를행정기관의 과장 등을 의미한다.

④ 분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준수
2.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관련내용 보고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지침」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체 없이”를 “72시간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 등 법 시행령 제40조에 해당할 때에는”으로, “지체 없이”를 “72시간 이내에”로 한다.

제12조의1을 제12조의2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를 “개인정보취급자”로 한다.

제13조의2제4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인정보취급자'의 정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시 대응 절차 및 통지·신고 시한 등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를 정비함.
-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각 부서장을 '분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하고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등 담당 업무를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직접 운영하는 일선 부서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및 유출사고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개인정보취급자'의 정의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으로 명확히 함(제2조제6호).
- 나. 각 부서의 장을 분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하고 담당 업무를 규정함(제5조제2항부터 제5조제4항까지).
- 다.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유출등에 따른 정보주체 통지 시한을 72시간 이내로 명시함(제7조제1항).
- 라.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유출등에 따른 신고 시한을 72시간 이내로 명시함(제7조제3항).
- 마. 법률에 근거가 없는 가명정보 전담 결합기관 지정 근거 조항을 삭제함(제13조의2).
- 바. 기타 정비가 필요한 자구를 수정함(제4조의2, 제5조, 제7조, 제12조의1, 제13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858호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출연 기관”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출자·출연 기관의 제도 운영 및 개선,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 성과계약, 재정 운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무부서”란 소관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기관이”를 “기관의”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지도·감독)”을 “(지도·감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출자·출연 기관은 예산편성, 기구 및 정원 변동, 임직원 채용·면직, 보수체계 개편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주무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주무부서는 총괄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중요 사항에 대해 출자·출연 기관이 주무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주무부서는 총괄부서와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 관련 업무 추진의 행정적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총괄부서’와 ‘주무부서’ 용어의 뜻을 정의함(제2조제2호~제3호)
- 나. 출자·출연 기관이 예산편성, 기구 및 정원 변동, 임직원 채용·면직, 보수체계 개편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주무부서와 협의하여야 하고, 주무부서는 총괄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는 규정을 신설함(제11조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859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을 제4항으로 이동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 ③ 조정위원회는 분쟁에 대한 심의·조정 전 책임 소재의 판단, 손실지원의 수준 권고·제시 등을 위하여 분쟁조정관을 둘 수 있다.

제52조에 제3항,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도매시장 시설사용에 대한 지시) ③ 시장은 시설현대화사업의 단계별 진행상황, 품목별 물류여건 등을 고려하여 팔릿(pallet: 물품의 적재·하역·보관·수송을 위하여 사용하는 적재면을 가진 수평 받침대) 적재 출하 촉진을 위해 법인, 중도매인, 시장도매인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물류체계를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매시장 내 물류운반장비의 운용대수를 적정규모로 관리할 수 있다.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경매에서 낙찰되지 아니하거나 판매원표가 정정되는 현황에 대하여 분기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원활한 농수산물 유통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해 도매시장 내 거래 당사자 간 분쟁 조정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내에 분쟁조정관을 둘 수 있으며, 도매시장 내 거래 농수산물의 불낙, 판매원표 정정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설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상위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가 농수산물의 팰릿(pallet) 적재출하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시장 종사자가 운용하는 물류운반장비에 대해 적정대수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도매시장 하역기계화, 물류효율화를 도모하고 시장 안전을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심의·조정 전 책임 소재의 판단, 손실지원의 수준 권고 등을 위해 분쟁조정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43조제3항 신설).
- 나. 팰릿 출하를 통한 하역기계화·물류효율화로 도매시장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팰릿 출하 조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제52조 제3항신설).
- 다. 도매시장의 물류체계를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도하게 증가되고 있는 물류운반장비의 운용대수를 적정규모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52조제4항 신설).
- 라. 도매시장의 경매에서 낙찰되지 아니하거나, 판매원표를 정정한 현황을 분기별로 실태조사하고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56조의2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9860호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업시행자”란 제3조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이행 주체”란 사업시행자로부터 위임 또는 계약에 따라 교통소통대책을 이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한다.

제5조 중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한다.

제7조 중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한다.

제9조제8항 중 “공사시행자 및 발주부서”를 “사업시행자 및 이행 주체”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공사시행자”를 “사업시행자 및 이행 주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사시행자”를 “사업시행자”로, “정당한”을 “사업시행자 또는 이행 주체가 정당한”으로 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공사시행자에게”를 “사업시행자 및 이행 주체에게”로, “공사시행자가”를 “사업시행자 또는 이행 주체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행 주체의 위반이 사업시행자의 지시 등의 책임에 기인한 경우에는,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사업시행자에게 조치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공사를 시행한 자”를 각각 “사업시행자”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공사시행자 및 대행자의 준수사항)”을 “(사업시행자 및 대행자의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사시행자”를 “사업시행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이행 주체에게 제10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을 준수하도록 지시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교통소통대책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11조에 의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에서는 교통소통대책의 이행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 대상을 ‘공사시행자’로만 규정하고 있어, 발주처(예: 특수목적법인)와 시공사 간에 책임소재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공공기관이 발주처인 경우에는 행정청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법적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교통소통대책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시공사에도 명확히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이번 개정에서는 ‘사업시행자’와 ‘이행 주체’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및 제출 의무는 사업시행자에게, 실제 이행 의무는 사업시행자와 이행 주체 모두에게 부과하도록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 사업시행자가 이행 주체에게 교통소통대책 준수의무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가능성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였음.

2. 주요내용

- 가. ‘사업시행자’와 ‘이행 주체’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함(제2조제4항과 같은조제5항 신설)
- 나.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변경함(제4조제1항, 제5조, 제7조)
- 다. “공사시행자 및 발주부서”를 “사업시행자 및 이행 주체”로 변경함(제9조제8항)
- 라. “공사시행자”를 “사업시행자 및 이행 주체”로 변경함(제10조제1항)
- 마. “공사시행자”와 “정당한”을 “사업시행자”와 “사업시행자 또는 이행주체가 정당한”으로 변경함(제10조제2항)
- 바. “공사시행자에게”와 “공사시행자가”를 “사업시행자 및 이행 주체에게”와 “사업시행자 또는 이행 주체가”로 변경함(제11조제1항)
- 사. 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제11조제2항 신설)
- 아. “공사를 시행한 자”를 “사업시행자”로 변경함(제13조제1항과 같은조제2항)
- 자. “공사시행자”를 “사업시행자”로 변경함(제14조의 제목과 제1항)
- 차. 공사시행자 및 대행자의 준수사항에 관련한 내용을 신설함(제14조제3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9861호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음악축제”를 각각 “축제”로 한다.

제6조제5호 중 “음악축제”를 “대표축제”로 한다.

제1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축제에 서울특별시 명의를 후원명칭 사용 및 서울특별시 장 명의를 상장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후원명칭 사용 및 상장 지원은 제외한다.

1. 단순 이벤트성 공연 행사
2. 정치목적의 행사 또는 단체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
3. 과도한 참가비 등을 부담하게 하는 행사
4. 행사와 관련하여 각종 부조리(후원 명칭 사칭)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행사.
5. 예술 경연 대회 상장 지원 등에 특별한 사유 없이 경연 대회 운영 규정 및 심사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경연 대회
6. 특별한 사유 없이 개최 실적이 없는 예술 경연 대회
7. 과거 행사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8. 서류제출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9. 단체 내 소송 등 민원이 진행 중인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는 일부 조문에서 특정 장르인 ‘음악축제’로 한정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축제를 포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동 조례 개정을 통해 장르 편중 없이 균형 있는 축제 육성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아울러 서울특별시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과 서울특별시시장 명의의 상장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서울시 후원 및 상장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음악축제' 표현을 '축제'로 수정(제4조)
- 나. '음악축제' 표현을 '대표축제'로 수정(제6조제5호)
- 다. 축제 지원 가능 분야 범위에 서울특별시 명의의 후원명칭 및 서울특별시시장 명의 상장 추가(제16조제4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862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0항부터 제17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7항(중전의 제16항) 본문 중 “제15항에”를 “제16항에”로, “제15항제1호”를 “제16항제1호”로 한다.

⑩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남성공무원이 신청하면 매 시술 때마다 제9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 일수만큼 배우자 동행휴가를 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시는 대한민국 17개 시도 중 인구밀도가 가장 높으나 합계출산율은 0.55명으로 최하위인 지역으로,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밀도 상승, 과잉 경쟁, 출산 후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 그에 따라 발생하는 초산 연령 상승과 동반하여 난임 또한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난임 치료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부부가 함께 참여하고 의지해야 하는 치료 전 과정에 동행할 수 있는 휴가 여건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됨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은 시술 종류에 따라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남성공무원의 경우 정자 채취일 단 하루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뿐 배우자 치료 시 동반할 수 있는 휴가 근거가 전무하며,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지난해 난임 치료를 위한 공무원의 휴가 여건 부족을 지적한 바 있음
- 따라서 본 개정은 배우자가 난임 치료 시술을 받을 경우 남성 공무원에게도 동행 휴가를 허용하는 조례를 신설해 어려운 치료 과정에 부부가 함께 참여해 이겨낼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매 시술 시 마다 제9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 일수만큼 배우자 동행휴가 부여(제24조제10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863호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9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부터 제18항까지를 각각 제12항부터 제1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8항(중전의 제17항) 본문 중 “제16항에”를 “제17항에”로, “제16항제1호”를 “제17항제1호”로 한다.

- ⑪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남성공무원이 신청하면 매 시술 때마다 제10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 일수만큼 배우자 동행휴가를 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시는 대한민국 17개 시도 중 인구밀도가 가장 높으나 합계출산율은 0.55명으로 최하위인 지역으로,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밀도 상승, 과잉 경쟁, 출산 후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 그에 따라 발생하는 초산 연령 상승과 동반하여 난임 또한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난임 치료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부부가 함께 참여하고 의지해야 하는 치료 전 과정에 동행할 수 있는 휴가 여건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됨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은 시술 종류에 따라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남성공무원의 경우 정자 채취일 단 하루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뿐 배우자 치료 시 동반할 수 있는 휴가 근거가 전무하며, 이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지난해 난임 치료를 위한 공무원의 휴가 여건 부족을 지적한 바 있음
- 따라서 본 개정은 배우자가 난임 치료 시술을 받을 경우 남성 공무원에게도 동행 휴가를 허용하는 조례를 신설해 어려운 치료 과정에 부부가 함께 참여해 이겨낼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난임치료 시술 공무원 및 배우자의 특별휴가 인정(제29조제11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864호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좋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인증 등) ① 시장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중 우수한 교육여건을 갖춘 기관에 대하여 ‘서울형 좋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인증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서울형 좋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인증 기준은 다음 각호를 포함하도록 한다.

1. 교육에 적합한 기관의 시설환경
2. 우수한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기관의 강사인력 현황
3. 전자출결시스템 설치 및 운영을 통한 출결현황 관리
4. 연계된 실습기관의 환경 및 실습지도자의 역량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제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시는 2025년 6월 기준 고령인구 비율이 약 19.5%에 달해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이에 따른 돌봄 서비스 수요의 급증 속에서 고령층의 신체적·정신적 특성을 이해하고 전문성을 갖춘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서울시에는 약 170여개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23개 기관이 출석부 허위 작성, 강사 및 직원 미상주 등 교육의 핵심과 직결된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는 등 교육의 질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따라 ‘좋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인증제’를 도입하여 요양보호사 교육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 양성 과정의 질을 높여 돌봄 서비스의 전반적인 품질과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좋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인증제'를 신설함(제28조의2)

◆ 서울특별시조례 제9865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중 “시 도시재생위원회”를 “시 도시계획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도시계획 관련 다양한 위원회의 통합 운영체계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의절차를 제 공하고자 도시재생위원회 기능을 도시계획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 예정임.
- 이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도시재생위원회에서 도시계 획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도시재생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로 변경(제30조제3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866호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2025년 12월 31일” 을 “2030년 12월 31일”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실효성 있는 이행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2019년부터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용 중에 있음.
- 동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 이하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 및 서울특별시 균형발전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지속 운용할 필요가 인정되므로,
- 균형발전사업의 연속성과 재정지원체계의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금년 12월 31일 기한 만료 예정인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함(제14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867호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서울특별시의회 보고)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권고사항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보고사항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관련 정책 추진 현황과 이행사항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점검과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권고 및 보고사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

2. 주요내용

- 가. 감정노동 종사자 노동환경 개선 관련 권고 및 보고사항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함(제23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868호

서울특별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노동자”란 택배원, 배달원, 대리운전원,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으로서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이동노동자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식 및 대기 공간 제공 기능
2. 노동복지 증진을 위한 건강·금융·법률 등에 관한 상담 제공 기능
3. 이동노동자의 자조모임 지원을 위한 공간 제공 기능
4.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동노동자 쉼터에 관한 사무를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자치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홍보)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이동노동자 쉼터에 관한 정보 제공 등 필요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이동노동자들은 업무 특성상 일정한 근무 장소가 없어 휴식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로 인해 노동 강도가 높아지고 노동복지에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음. 이에 따라 이동노동자의 휴식과 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이동노동자”와 “이동노동자 쉼터”에 대하여 정의함(제2조)
- 나. 시장의 책무로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시책 마련을 규정함(제3조)
- 다.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운영 및 이동노동자 쉼터의 기능을 규정함(제4조)
- 라. 시장은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을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5조)
- 마. 시장은 자치구에 대하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6조)
- 바. 이동노동자 쉼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7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869호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임차인 보호) ① 시장은 안심주택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에도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률·금융·주거지원 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2. 긴급임시주거 지원 및 이주비 지원
3. 미반환 임대보증금에 대한 용자 등의 지원
4. 그 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최근 청년안심주택에서 임대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발생하여 임차인들의 주거 불안이 심각한 상황이나 법적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청년안심주택의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장이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이 안심주택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금융·주거지원 상담, 긴급임시주거 지원 및 이주비, 미반환 임대보증금에 대한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16조의2)

◆ 서울특별시조례 제9870호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폭염 및 한파에 대한 긴급지원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기후변화와 함께 겨울철 한파 외에도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시민 건강 및 생활 안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2024년 서울시 온열질환자는 27명(사망자 미공개)에서 2025년 같은 기간 85명(사망자 미공개)으로 3배 이상 급증했으며, 전국적으로는 2024년 3,704명(사망 34명), 2025년 8월 초까지 3,000여 명(사망 18명)으로 집계되었으며, 특히 취약계층의 피해가 큰 것으로 추정됨.
- 현재 조례는 월동대책비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있어 폭염기에 대비한 지원 예산에 관한 규정이 없음.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해 계절별로 지원의 필요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차별을 둘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따라서 행정적 지원의 범위를 겨울 뿐 아니라 여름철 폭염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폭염 및 한파에 대한 긴급지원비'를 신설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위험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정철학인 동행매력특별시에도 부합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폭염 및 한파에 대한 긴급지원비를 신설함(제5조제12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9871호**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
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 법정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를 시행하여 교통량을 감축하는 것

별표1 중 업무택시제란 아래에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프로그램	대상	이행기준	최대경감비율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시설물 소유자	○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매월 2일 이내 휴업(휴무) 시행	○ 부담금의 100분의 5범위 내

별지 제1호서식 중 업무택시제란 아래에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프 로 그 램	최대경감 (%)	신청 여부	세부사항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5		법정 의무휴업 일수(월단위) : 자율휴무 일수(월단위) :

별지 제2호서식 중 업무택시제란 아래에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프 로 그 램	최대경감 (%)	이행계획서 신청내용	경감신청	비고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5			

별지 제3호서식 중 업무택시제란 아래에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프 로 그 램	최대경감(%)	신청사항	결정사항	비고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5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담금의 경감도 규정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에 대하여 경감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실정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제도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에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를 정의함(제2조제4호차목)
- 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에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이행시 최대 경감 비율(5%)을 신설함(별표 1).

◆ **서울특별시조례 제9872호**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민이 인공지능기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을 위한 단계별·분야별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3.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과 관련된 법·제도의 개선
4.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5.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을 위한 재원의 조달
6.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각각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관련 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의 정책 및 프로그램의 점검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관련 시 공무원
2.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3.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공지능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4조(존속기한)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제1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정책 동향 및 제도 조사
2.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시험 및 평가
3.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4.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관련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자치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확산으로 디지털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시민들이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한 실정임.
- 이에 서울시가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시민들이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윤리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시민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윤리적이며 책임감 있는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나.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에 따른 인공지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자문위원회를 같은 조례에 따른 인공지능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연계함(제5조 및 6조)
- 다. 교육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 체계 구축을 규정함(제16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873호

서울특별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1인 창조기업” 용어의 뜻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5조와 연계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창조기업 육성 정책의 기본방향
2. 1인 창조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3. 1인 창조기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1인 창조기업 관련 통계 조사·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인 창조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1인 창조기업의 성장 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인 창조기업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2.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3. 1인 창조기업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사업
4. 1인 창조기업 제품의 국내외 마케팅 및 판로 확보 지원
5. 1인 창조기업 성공 사례 발굴 등 홍보사업
6. 1인 창조기업 자금 지원 연계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기관, 단체, 법인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1인 창조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교육기관,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시장은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2022년 기준 전국 1인 창조기업의 수는 1,007,769개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22.4%인 225,331개의 1인 창조기업이 서울에 소재함.
- 이와 같이 정보통신기술, 문화콘텐츠와 같은 분야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1인 창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해 향후에도 무형의 지식을 기반으로 한 1인 창조기업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따라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 및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나.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5조)
- 다.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6조)
- 라. 1인 창조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제7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874호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하며, 독서문화진흥 사업을 추진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추진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북스타트” 를 “엄마 북돋움” 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우” 를 “경우 참여자에게 참여 기간의 참여 실적, 횟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 또는 물품,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교통 편의 등을” 로, “참가자에게 상품권, 기념품, 물품 등을 제공” 을 “제공” 으로 한다.

5. 공공 독서 모임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시 독서문화 진작을 위해 독서문화진흥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 근거 규정을 개정하여, 시민의 독서 활동을 촉진하고 일상 속 독서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시 독서문화 진작을 위해 독서문화진흥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 근거 규정을 개정함(제37조제1항)
- 나. 독서문화진흥 사업에 ‘공공 독서 모임’을 신설하고, 북스타트 사업을 ‘엄마북돋움’으로 개정함(제37조제2항)
- 다. 독서문화 진흥 사업 참여자에게 교통 편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제37조제3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875호**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서울특별시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요보호아동” 을 “보호대상아동” 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 를 “다음과”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8세 미만인 사람” 을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입양특례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중전의 제4호) 중 “요보호아동” 을 “보호대상아동”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중전의 제5호) 중 “요보호아동” 을 “보호대상아동” 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가정” 을 “영구적인 가정” 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유사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입양과 관련한 기관 또는 개인이 입양으로 인하여 부당한 재정적 이익 등을 취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 제목 “(입양가정 지원사업)” 을 “(지원사업)” 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권익과” 를 “권익 및” 으로, “지원할 수 있다” 를 “실시하여야 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원만한 적응” 을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의 상호적응” 으로, “사회복지서비스” 를 “복지서비스” 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 해소 정책의 수립·시행

제5조의 제목 “(지원대상)”을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가정에 다음 각 호의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양육수당
2. 의료비
3. 아동교육지원비
4. 그 밖에 필요한 양육보조금

② 시장은 입양을 축하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제5조의 양육보조금 및 입양축하금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한다.

제7조(중전의 제8조) 중 “입양기관과”를 “자치구 등과”로, “입양가정 지원”을 “지원”으로 한다.

제8조(중전의 제9조) 중 “입양가정 지원을 위한 지원”을 “제5조에 따른 지급”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2023년 7월 18일 전부개정되어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입양가정 지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의 제명을 입양 관련 지원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나.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한 편견 및 차별 해소,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의무를 시장의 책무에 추가하여 규정함.(제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다.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수정함. (제4조)
- 라. 지원사업에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한 편견 및 차별 해소 정책 수립·시행을 추가하여 규정함.(제4조제6호 신설)
- 마. 양육보조금과 입양축하금 등의 지급 및 환수조치에 관하여 규정함.(제5조 및 제6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876호

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권리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별표 1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Live Visual Description)”이란 일상생활, 박람회, 체육활동, 토론회, 등 다양한 행사 및 공간에서 시각장애인이 시각 정보를 음성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지원, 시각장애인과 같은 시점을 공유하며 방향, 감각적 표현, 객관적 묘사 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해설 기법을 말한다.
3.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직속기관·출장소·사업소
 - 나. 서울특별시의회
 -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이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 및 서비스의 제공, 전문인력 양성, 장비 제공, 정책 연구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에 대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현장영상해설 지원) ① 시장은 공공기관 등에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지원을 위한 인력을 배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장영상해설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자치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시장은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나아가 「장애인복지법」 제22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정보 접근 및 의사소통에 있어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필요를 따져 지원을 강구해야하며, 장애의 유형, 정도, 특성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받아 생활 영역에 있어 차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 주요 정보인지 감각인 시각 확보가 어려워 일상생활부터 박람회 참여, 체육활동 및 관람, 토론회 참석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예시로 서울시의 대표적 행사인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등 산업 육성과 문화 양성 목적의 박람회 참여조차 지원서비스가 없어 특정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 및 개발 경험의 기회도 부재한 실정임
- 이에 본 조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시각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경험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의 눈높이에서 눈앞에 펼쳐진 상황, 구도, 느낌, 공간표현 등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의 체계적인 지원을 서울시 차원에서 보장하고자 발의되었음

2. 주요내용

- 가.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을 구체적으로 정의함(제2조)
- 나.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해 시책수립, 행정·재정적 지원 등 시장의 책무를 명시함(제3조)
- 다.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5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877호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디지털·AI 기술 도입 지원 사업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장인연합회(이하 “서울상인연합회”라 한다)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울상인연합회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서울상인연합회에 대하여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서울상인연합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촉진”을 “촉진, 디지털·AI 역량 강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전통시장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 등의 지원사업과 상인교육에 디지털·AI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전통시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상인연합회의 안정적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상인 조직의 자생력과 지원체계를 강화함.

2. 주요내용

- 가. 전통시장 등의 디지털·AI 기술 도입 지원 사업의 시행 근거를 마련함(제4조제1항제6호).
- 나. 서울상인연합회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4조제2항).
- 다.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지원을 명시함(제5조제1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878호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이하 “표창권자” 라 한다)는 다음과” 를 “사람(이하 “표창권자” 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2. 시 소속기관의 장(3급 이상 공무원 및 소방서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표창의 취소) ①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표창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표창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표창을 받은 경우
3.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표창 취소 시 제13조에 따른 공적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감사장의 취소는 공적심의회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표창권자는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상장·감사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제1호 본문 중 “공적이 현저하며,” 를 “공적이 현저한” 으로 하고,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이하 “공무원등” 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를 “공무원 및 시·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임직원(이하 “공무원등” 이라 한다)” 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우수한 자치구 및 시 소속기관” 을 “우수한 시 소속기관, 자치구, 자치구 소속기관” 으로 한다.

제18조 중 “관하여 필요한” 을 “필요한”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표창의 취소 시 공적심의회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어떤 공적심의회인지 특정하지 않고 있어, 공적심의회 규정 조항을 명시하여 특정하고, 표창 대상을 현행화하여 조문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표창권자 규정 내용을 현행에 맞게 정비함(제4조)
- 나. 표창 취소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표창 취소 시 제13조에 따른 공적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제6조의2 신설)
- 다. 표창장 수여대상에서 최소 근무연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수여 대상을 현행화 함(제7조제1호 및 제2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9879호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제20조로 하고,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하며, 제11조 및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자동차의 차령)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차령 및 연장 조건은 평균주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일반택시운송사업에 필요한 차고면적 기준)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 비고 제7호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에 필요한 보유차고의 최저 면적기준을 100의 50으로 경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필요한 보유 차고 최저 면적 경감 기준을 종전 40퍼센트에서 앞으로는 50퍼센트 범위로 확대하는 규정을 신설함

2. 주요내용

- 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제11조제1항 신설)
- 나. 기본차령 및 연장 조건은 시장이 정하도록 명시(제11조제2항 신설)
- 다. 일반택시운송사업에 필요한 보유 차고 최저 면적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 비고 제7호에 따라 50퍼센트 경감함(제18조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9880호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투자기관과”를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모성·부성의 권리 보장) 시장·소속기관 및 투자·출연기관의 장과 사용자는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성권·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현행 제20조의 ‘출연기관’ 을 규정하는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평가 등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현행 조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모성·부성 권리보장의 주체를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투자기관과’ 를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으로 수정함(제20조)
- 나. 모성·부성 권리보장의 주체를 ‘시장·소속기관 및 투자·출연기관의 장’ 으로 규정하여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성권·부성권 보장을 신설함(제25조의2)

◆ 서울특별시조례 제9881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5항제1호 중 “1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3호까지와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5호까지와 제7호”로, “1년”을 “3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영 제115조의4제1항제4호”를 “영 제115조의4제1항제6호와 제6의2호”로, “2년”을 “1년”으로 한다.

별표 2의2의 차양시설·비가리개시설의 기타란 중 “학교 내에 설치하는 것”을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영 제115조의4제1항제1호와 제3호부터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나 이 조례 시행 전에 감경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제45조제5항제1호와 제2호 개정규정에 따른 기산일은 본 조례 개정 이후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날로 한다.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1호와 제3호부터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여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감경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45조제5항제1호와 제2호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감경 기간의 기산일은 최초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 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첫째, 고의성이 없고 위반면적이 경미한 경우 등을 대상으로 이행강제금 감경기간을 확대하고,
- 둘째, 차양·비가리개 용도의 가설건축물 설치 시 신고를 통해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을 추가함.

2. 주요내용

- 가. 기존 위반건축물을 매수한 경우 이행강제금 감경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적용(제45조제5항제1호)
- 나. 위반면적이 경미한 경우나 임차인이 있어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감경기간을 3년으로 확대 적용(제45조제5항제2호)
- 다. 별표2의2 용도 중 차양시설·비가리개시설의 기타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추가함(별표2의2 수정)

◆ 서울특별시조례 제9882호

**서울특별시 조례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조례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조례의 어려운 용어를 올바른 우리말로 순화하고, 법령 및 다른 조례의 제명이나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민관기관”을 “민간기관”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경제정책실장”을 “경제실장”으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단서 중 “제11조제2항”을 “제11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목”을 “나목”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3호 중 “제5호가목”을 “제10호가목”으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

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주택실 건축기획과”를 “미래공간기획관 미래공간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6호 중 “방지하는”을 “방치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여성가족정책실장”을 “여성가족실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공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정보시스템과장애”를 “정보시스템과에”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중 “컴퓨터화일”을 각각 “컴퓨터 파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중 “컴퓨터화일”을 각각 “컴퓨터 파일”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7호 중 “징하는”을 “정하는”으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설치기준란의 “주택법시행령 제3조”를 “「주택법 시행령」 제10조”로, “소형주택”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로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재정기획관”을 “규제혁신기획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평가담당관”을 “규제개선담당관”으로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의2제3항”을 “법 제20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

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 제목 “리버버스 운영 및 지원” 을 “한강버스 운영 및 지원” 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리버버스” 를 “한강버스” 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리버버스” 를 “한강버스” 로 한다.

제16조제5호 중 “리버버스” 를 “한강버스” 로 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으로 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창의행정담당관” 을 “조직담당관” 으로 한다.

제9조제6항 중 “창의행정담당관” 을 “조직담당관” 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으로 한다.

제18조(「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창의행정담당관” 을 “조직담당관” 으로 한다.

제19조(「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세종로 1-68번지” 를 “세종대로 172” 로 한다.

제20조(「서울특별시의회 공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으로 한다.

제21조(「서울특별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으로 한다.

제22조(「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으로 한다.

제19조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으로 한다.

제23조(「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24조(「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25조(「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26조(「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27조(「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28조(「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29조(「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30조(「서울특별시 농수산물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농수산물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31조(「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32조(「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37조제3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33조(「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34조(「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후단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35조(「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36조(「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37조(「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38조(「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39조(「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후단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40조(「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41조(「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42조(「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으로 한다.

제43조(「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으로 한다.

제44조(「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 후단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으로 한다.

제45조(「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으로 한다.

제46조(「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으로 한다.

제47조(「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4제4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으로 한다.

제48조(「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후단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으로 한다.

제49조(「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으로 한다.

제50조(「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으로 한다.

제51조(「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후단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으로 한다.

제52조(「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후단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53조(「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54조(「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후단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55조(「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56조(「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9조제2항 후단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57조(「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58조(「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후단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59조(「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60조(「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제19조제4항제1호”를 “제19조제5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제61조(「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4호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로 한다.

제62조(「서울특별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 중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2”를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로 한다.

제63조(「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후단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64조(「서울특별시 시정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정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우리시 조례 내 어려운 용어,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사항을 일괄로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법령 및 조례 개정에 따른 제명, 인용조문 현행화
- 나. 조직개편(조직명 및 사무 변경)에 따른 부서명 정비
- 다. 그 밖의 경미한 오기 정정라. 어려운 용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비

◆ 서울특별시조례 제9883호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에 따른 벌칙

제20조제2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을 “규칙이 정하는 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종물 :”을 각각 “종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항공기 :”를 “항공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중요재산 :”을 “중요재산:”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별지 제2호서식의”를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3호서식의”를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법 제25조와 영 제14조”를 “법 제36조의3과 영 제21조의2”로, “별지 제4호서식의”를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를 “법 제36조의3”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중전의 제2호) 중 “법 제32조제2항”을 “법 제32조제3항”으로 한다.

1. 법 제20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방보조금 삭감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지방보조사업자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시장은 법 제32조제1항·제3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영 제19조제1항·제3항 또는 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31조제1항제4호 중 “법 제25조”를 “법 제36조의3”으로 한다.

제35조 중 “것 이외”를 “사항 외”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인용 조항 등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관련 서식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가. 「지방보조금법」 개정에 따른 조문내용 현행화(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31조)
- 나. 부정수급 벌칙 인용 조문 내용 보완(제11조)다. 별지 서식 시행규칙에 위임(제20조, 제21조, 제23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884호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1과”를 “별표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50플러스 캠퍼스 :”를 “50플러스캠퍼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50플러스센터 :”를 “50플러스센터:”로 한다.

제6조의4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수급자 :”를 “수급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가족 :”을 “가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자 :”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수급자 :”를 “수급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외한다) :”를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경우 :”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제6조의5 중 “시용”을 “사용”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별표 1을 별표로 하고, 같은 표의 50플러스캠퍼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50플러스캠퍼스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	은평구 통일로 62길7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서울시50플러스 남부캠퍼스	구로구 오류로 36-25
	서울시50플러스 북부캠퍼스	도봉구 마들로 13길84
	서울시50플러스 동부캠퍼스	광진구 능동로 3길 7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서울시50플러스 동부캠퍼스’ 를 인생이모작지원시설의 목록에 추가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50플러스캠퍼스 시설 목록에 서울시50플러스 동부캠퍼스를 추가함(별표).

◆ 서울특별시조례 제9885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 한다.

제7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2자녀 이상 출산한 소속공무원의 지원 등” 을 “자녀출산 지원” 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 중 “시술비” 를 “시술비와 산전·산후 관리에 필요한 서비스” 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및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년·명예 퇴직공무원의 격려금 지급

16. 소송비용 등의 지원을 위한 보험계약 체결

제9조제4항 중 “위원회의 위원” 을 “위원” 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담당과장” 을 “담당사무관”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중복·사문화된 조항을 정비하여 후생복지 제도 현행화하고 퇴직공무원에 대한 일률적 지원조항을 개선하여 후생복지 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중복·사문화 조항 삭제(현행 제7조제1호, 제8호)
- 나. 정년·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일률적 지원근거 해소(제7조제5호) 다. 출산지원 조항 개선 및 확대 반영(제7조제9호, 제14호)
- 라. 공무원 행정종합배상공제 운영 조항 신설(제7조제16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9886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시장” 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3조 중 “2025년 12월 31일” 을 “2030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기금운용관으로 한다” 를 “기금운용관이 맡는다” 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해당년도” 를 “해당연도” 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주거안정 지원을 통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기금 존속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제3조)

- ‘2025년 12월 31일’ 에서 ‘2030년 12월 31일’ 로 연장

◆ 서울특별시조례 제9887호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廳)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廳)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廳)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갤러리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 일반인이 서울갤러리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갤러리”란 도시홍보, 시민 참여와 소통, 문화체험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청사에 설치한 복합문화시설을 말한다.
2. “대관”이란 서울갤러리 내 각 공간의 사용을 허가받아 전시, 공연, 행사 등을 진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대관자”란 제8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개관 및 휴관) 서울갤러리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2. 설
3. 추석
4.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

제4조(이용료) ① 서울갤러리의 이용은 무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자체적으로 기획하거나 대관자가 개최하는 특정 전시, 공연, 행사 등에 대해서는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는 전시, 공연, 행사 등의 성격·내용 또는 규모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서울갤러리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5조(무료이용)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6. 7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7.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8.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
 1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
 19.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20.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
 2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중기·장기복무 제대군인
 22. 그 밖에 시장이 서울갤러리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무료이용을 실시하거나 대관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이용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을 금지한다.

1.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2. 그 밖에 시설물 또는 작품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행위의 제한) 시장은 이용자가 서울갤러리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퇴관

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고성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제8조(대관허가) ① 시장은 서울갤러리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시홍보, 시민 참여와 소통, 문화체험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공연, 행사 등을 위하여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대관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대관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대관료) ① 대관자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일 전날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대관료는 시설 사용료와 냉·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한다. 이 경우 냉·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는 도시가스요금 또는 전기요금에 따라서 산출한다.

③ 대관료의 징수·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대관자의 준수사항)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서울갤러리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① 이용자가 서울갤러리 시설물 또는 작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대관의 경우에는 시설물 또는 작품 등의 관리에 대하여 대관자가 책임을 진다.

② 대관자는 대관 기간에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서울갤러리 시설 또는 설비가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2조(서울갤러리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서울갤러리 정책의 방향 정립과 진흥에 관한 사항
2. 서울갤러리 주요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서울갤러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위원의 임기는 회의종료와 함께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시홍보, 시민 참여와 소통, 문화체험 등을 위한 전시, 공연, 행사 등과 관련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시의원
3. 서울갤러리 소관 담당 국장
4. 그 밖에 시장이 서울갤러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때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소관부서의 담당 사무관이 맡는다.
- ⑦ 위원회의 구성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회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운영·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서울갤러리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울갤러리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이용시간, 휴관일, 대관, 이용료 및 편의시설 설치·운영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서울갤러리의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의 사항은 이 조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17조(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시장은 서울갤러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갤러리 내부에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노후화된 ‘시민청’ 을 서울의 미래 비전 홍보, 시민 소통, 문화 향유를 위한 복합문화시설로 개편하고, 명칭을 ‘서울갤러리’ 로 변경함에 따라 시설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및 행정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설 명칭 변경을 조례 제명과 전체 조문에 일괄 반영
 - 제명 변경 :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廳) 운영 및 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
- 나. 제2조 : 시설 명칭 변경 및 기능 확대 반영 / 복수 장소 조항 삭제
 - 시민참여·소통·문화체험 공간→도시홍보·시민참여·소통·문화체험 공간
- ⇒ 제8조 및 제13조에서도 서울갤러리 정의와 용어 통일
 - 서울시청사 단일 공간 운영으로 변경됨에 따라, 복수 위치 전체를 둔 제2항 삭제
 - ※ 기존 시민청은 시청·삼각산 복수 운영
- 다. 제5조 : 무료이용 대상 조항 현행화(대상자 범위 : 11개 그룹 추가)
 - 서울시 문화시설 간의 기준 일관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근 제정·개정된 관련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의 무료 이용 대상 범위를 반영하여 조정
- 라. 제10조 : 대관료 감면 규정 삭제
- 마. 제13~15조 : 운영자문위원회의 비상설 운영에 따른 개정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비상설 운영 원칙을 반영하여 위원 임기, 부위원장 직무, 회의 소집 절차 등 불필요한 조항 삭제

◆ 서울특별시조례 제9888호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2025년 12월 31일” 을 “2030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1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변경함(제3조)
- 나. 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신설(제11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889호
서울특별시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2025년 9월 29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공격·위협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강화 및 관계 기관 협력 체계 강화에 필요한 사항과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 등을 침입·교란·마비·과파하거나 정보를 위조·변조·훼손·절취하는 등의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각급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직속기관·사업소·합의제 행정기관·의회사무처·자치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공단 및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3. “정보시스템”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정보보호시스템”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을 말한다.
5. “정보통신기기등”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설비·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
6. “정보통신실”이란 전산실·통신실·데이터센터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버·스위치·방화벽·침입차단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등이 설치·운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각급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위협으로부터 사이버공간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각급기관의 장은 서울특별시 본청 및 각급기관(이하 “각급기관등”이라 한다)의 사이버보안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조직, 인력 및 예산을 구성·운영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시장 및 각급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소관사무 영역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사이버공격·위협으로부터 소관사무 영역을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④ 각급기관의 장은 시장이 수립·시행하는 사이버보안 정책에 상응하는 사이버보안 수준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각급기관등의 사이버보안 업무에 적용한다.

제5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의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서울특별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6조(사이버보안관리관 운영) ① 시장은 사이버보안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소관사무 영역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적정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 조직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할 사이버보안관리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1. 사이버보안 정책·계획의 수립·시행 및 사이버보안 업무의 지도·감독
2. 사이버보안 전담 조직 관리, 전문 인력의 양성
3.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업무
4. 정보통신실, 정보통신망 등의 보안 관리·감독
5. 사이버공격·위협 대응훈련 및 사이버보안 실태 점검 실시
6. 보안관제, 사고 분석·대응 및 관계 기관 정보 공유
7. 사이버보안 교육 및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계획 수립·시행
8. 각급기관등에 대한 사이버보안 감사
9. 정보보호시스템의 운용, 보안 관리 및 복구 대책 수립
10. 분임사이버보안관리관 업무 감독
11.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이버보안 관련 사항

③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할 사이버보안관리관을 임명하고, 이를 보조할 사이버보안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소관 사이버보안 업무의 지도·감독
2. 소관 정보통신실, 정보통신망 등의 보안 관리·감독
3. 사이버공격·위협 대응훈련 및 사이버보안 실태 점검 협력
4. 보안관제, 사고 분석·대응 및 관계 기관 정보 공유 협력
5. 사이버보안 교육 및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계획 수립·시행
6. 소관 정보보호시스템의 운용, 보안 관리 및 복구 대책 수립
7. 기관 분임사이버보안관리관 업무 감독
8.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이버보안 관련 사항

④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각급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분임사이버보안관리관 운영) ① 시장은 사이버보안관리관이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관리관을 임명하고, 이를 보조할 분임사이버보안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임사이버보안관리관의 자격요건, 임명 절차 및 업무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각급기관의 규모와 소관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사이버보안관리관 및 사이버보안담당자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각 부서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인력을 분임사이버보안관리관으로 임명하고, 이를 보조할 분임사이버보안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사이버보안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사이버보안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사이버보안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국내외 동향, 신기술 도입 및 대응에 관한 사항
3. 사이버공격·위협 예방을 위한 대책
4. 사이버보안 교육의 활성화
5.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6. 관계 기관 협력 체계 강화 방안
7.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8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사이버보안 업무에 대한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에 대한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이버보안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이버보안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사이버보안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2. 주요 업무의 추진성과 평가
3. 국내외 사이버보안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부위원장 2명 중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당연직: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이 속한 실·본부·국의 장
2. 위촉직: 사이버보안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사이버보안 관련 전문가
 - 나. 서울특별시 소재 기업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 다.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이 속한 실·본부·국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 라.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위촉직 위원을 우선한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소속 사무관이 맡는다.
- ⑤ 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자문 후 자동 해산한다.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회의결과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⑦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 ⑧ 그 밖에 위원의 위촉 해제, 제적·기피·회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자료 제출)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자체 진단·점검, 제19조에 따른 사고 조사, 제25조에 따른 사이버보안 감사 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3조에 따른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 등 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각급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각급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3조(사이버보안 교육) ① 시장 및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임직원의 사이버보안에 대한 인식과 사이버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직무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③ 시장 및 각급기관의 장은 사이버보안관리관 및 사이버보안담당자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소속 공무원의 사이버보안 지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교육 이수나 학술회의 참가 등을 장려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이수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교육 이수나 학술회의 참가 등을 장려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4조(사이버보안 예방 조치 등) ① 시장은 사이버공격·위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각급기관등에서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검토 결과를 각급기관등에서 이행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 ② 시장 및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실정에 맞게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을 지정하고, 정기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③ 시장 및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보안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하며, 구체적 범위·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④ 시장은 사이버공격·위협을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방·대응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정기적인 예방 점검·훈련 실시
 2. 안전한 정보통신기기등의 도입 및 활용

3. 사이버공격·위협 탐지, 정보 공유, 사고 신고 등 체계의 구축·운영
4. 전문 인력 확보 및 직무교육 실시
5.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활동

제15조(사이버보안 자체 진단·점검) ① 시장은 각급기관등에 대한 사이버공격·위협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체 진단·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 정보시스템
2. 대시민·업무용 홈페이지
3. 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 등 정보보호시스템
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대상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 진단·점검 이외 각급기관등의 사이버보안 강화에 필요한 경우 사이버보안 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 진단·점검 및 제2항에 따른 사이버보안 실태 점검 결과 취약요소를 발견한 경우 각급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각급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인공지능 등 신기술 활용에 대한 보안 강화) ① 각급기관등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 위협을 사전 식별하고 보안 취약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 자율주행시스템 등 신기술 활용 사업
2. 클라우드컴퓨팅, 무선랜, 영상정보처리기기, 사물인터넷 등 내부망과 분리된 영역에 구축되어 운용되는 사업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보안관제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각급기관등에 대한 사이버공격·위협을 즉시 탐지·대응(이하 “보안관제”라 한다)하기 위하여 보안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안관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각급기관등의 정보보호시스템에서 생성된 로그의 수집 및 저장
2. 각급기관등에 대한 사이버공격·위협 탐지 및 분석
3. 각급기관등에 대한 사이버공격·위협 대응 및 초동 조치
4. 각급기관등에 대한 사이버공격·위협으로 인한 사고 조사
5. 각급기관등에 대한 사이버공격·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

③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보안관제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보안관제센터와 연계된 보안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규모와 소관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다른 기관이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에는 직접 설치하지 않고 다른 기관의 보안관제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관제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경보 발령) ① 시장 및 각급기관의 장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5조에 따른 경보가 발령된 경우 경보 단계별로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경보 단계별로 시장 및 각급기관의 장이 하여야 하는 조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사고 조사·보고) ① 시장은 각급기관등에 대한 사이버공격·위협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격 주체 규명, 원인 분석 및 피해 내역 확인 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각급기관의 장에게 각급기관의 업무 수행 및 서비스 제공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사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각급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위협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이버공격·위협으로 인한 사고로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급기관등의 개인정보처리자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사이버보안 복구 체계) ① 시장은 제19조에 따른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고의 경중에 따라 사이버보안 비상대책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필요시 시장에게 제1항에 따른 사이버보안 비상대책반의 구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이버보안 비상대책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사이버공격·위협 대응훈련) ① 시장 및 각급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급기관등에 대한 사이버공격·위협에 대비한 통합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 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전에 훈련 일정 등을 해당 각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 훈련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급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훈련 및 제2항에 따른 통합 훈련의 범위와 세부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위협정보의 공유) ① 시장 및 각급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위협의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위협정보”라 한다)를 기관 간 상호 공유할 수 있다.

1. 사이버공격·위협의 방법 및 대응 조치에 관한 정보
2. 사이버공격·위협에 사용된 악성 소프트웨어 및 이와 관련된 정보
3. 정보통신망, 정보시스템, 정보보호시스템, 정보통신기기등의 보안 취약점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이버공격·위협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정보

② 시장 및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협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위조·변조·훼손 및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협력 체계) 시장은 사이버보안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국내외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과의 사이버보안 협력 및 정보 공유를 통한 위기 대응체계 구축
2. 국제기관 및 민간기관과의 사이버보안 정보 공유 및 공동 연구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세미나, 콘퍼런스, 포럼 등의 개최
4. 그 밖에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24조(협의회) ① 시장은 사이버보안 정책 조정 및 정보 공유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169조에 따른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차원의 민·관 협력 협의회 등을 구성하거나, 필요에 따라 관계 기관이 주관하는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사이버보안 감사) ① 시장은 각급기관등의 사이버보안 업무 및 활동을 조사·점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사이버보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절차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3조의2제1항제2호의 지침을 참고하여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이버보안 감사를 실시한 결과 필요한 경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감사기구에 자체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자체 진단·점검을 실시할 때에 각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제1항에 따른 사이버보안 감사에 활용할 수 있다.

제26조(위규자 처리) 시장은 사이버보안 위규자(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규자 처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시행된 위규자(규정 위반자) 처리기준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임명된 정보보안담당관은 이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이버보안관리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그 밖에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AI, 클라우드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사이버공격·위협의 고도화·지능화에 대비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보안 체계를 구축하여 중단 없는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관별 사이버보안관리관 임명 및 사이버보안담당자 지정을 통해 사이버보안 역량을 높이고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 나. 5년 주기 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 다. 사이버공격·위협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사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상대책반 구성·운영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라. 사이버보안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 마. 사이버보안 업무 및 활동을 조사·점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사이버보안 감사를 실시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9890호

서울특별시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善用)과 문화 활동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77 일대 광장형태로 조성된 장소를 말하며, 체육 및 조경시설, 주차장, 종합안내소, 화장실 등 해당 구역 지상 및 지하에 설치된 부속 시설물을 포함한다.
2. “사용”이란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신청자”란 자신의 명의로 책임하에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사용자”란 광장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 사용허가 통보를 받은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사용료”란 전시, 공연, 행사, 교육 등을 위하여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이용료”란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의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관리)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평화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광장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광장에 부속된 시설물 중 주차장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체육 시설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리한다.

제2장 시설의 사용 등

제4조(사용허가 신청) 신청자는 사용 목적과 일시, 신청자의 성명과 주소, 사용 예정인원 등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광장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일의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제4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공공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그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 ② 사용일이 같은 중복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순으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사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3. 개인 또는 단체가 주관하는 체육행사
 4. 어린이, 청소년, 여성 및 65세 이상 어르신 관련 행사
- ③ 시장은 광장의 안전 관리, 사용 독점 방지, 의무 불이행 시 조치 등을 위해 사용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등 통지) ① 시장은 광장 사용허가신청에 대한 허가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신청자는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사항 변경)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광장 사용허가 통지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공익을 위하여 광장 사용이 필요한 경우
2. 시민의 안전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광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광장 사용허가신청서에 기재된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처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광장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① 시장은 사용자에게 대하여 별표 1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항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이 허가일로부터 4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가 사용일이 지난 후에 미사용에 대한 사용료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일에 광장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체육시설을 전용사용하려는 자는 사용허가 시의 지정기한까지 별표 2의 사용료의 추산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우

2. 문화·예술 진흥 등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징수 및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 157조에 따른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별표 2의 사용료는 사용개시일 전 사용자의 사용허가취소(사용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요청시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

1. 10일전까지 취소 시: 전액 반환

2. 5일전까지 취소 시: 10분의 9

3. 1일전까지 취소 시: 10분의 7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개인연습,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제11조(이의신청) ①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에 대한 불허통지를 받은 신청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원상회복 등) ① 사용자는 광장 사용 후 설치한 가설물의 제거, 청소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광장 사용으로 인하여 광장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제3장 시설의 이용

제13조(이용료) ① 시장은 시설의 이용자에게 원가·물가상승률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3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게는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의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의 그 유족 또는 가족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8.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9.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족
1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중기·장기복무 제대군인
11. 65세 이상 어르신

제14조(이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이용료는 시설을 이용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는 이용 시작일 전 이용자의 이용취소 요청시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

1. 10일전까지 취소 시: 전액 반환
2. 5일전까지 취소 시: 10분의 9
3. 1일전까지 취소 시: 10분의 7

③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제15조(이용 제한)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조례·규칙 또는 관리·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이용료를 채납하거나 이용목적에 위반한 경우
3. 다른 이용자 또는 시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4장 운영의 위탁

제1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광장의 사용, 광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관리·운영규정의 작성 등) ① 수탁기관은 광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광장의 관리·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광장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위탁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 사용허가신청서

행 사 명 칭			
사 용 목 적			
사 용 일 시		년 월 일(요일) 시 분 ~ 년 월 일(요일) 시 분 (시간 분)	
사 용 인 원		사용면적	m ²
행 사 내 용			
신 청 자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FAX	()
	성 명 (단 체 명)		
신청단체의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
	성 명 (단 체 명)		
『서울특별시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행사계획서(사용장비, 시간계획 등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 2. 사용 위치도(현장답사 후 평면도 표시) 3. 시설물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무대, 천막, 현수막, 의자 등 기타시설물 설치시) 4. 안전관리계획서(시설물 설치 및 이용, 광장사용자, 기타 행사참여자 등 대상)			

[별표 1]

광장사용료 기준

(제9조 관련)

구 분	단 위	금 액(원)	비 고
사 용 료	m ² /시간	10 ~ 20	
기 타	1. 광장면적의 2분의 1을 넘게 사용하는 경우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3. 야간사용료(18:00시~익일 06:00시)는 사용료의 3할을 가산한다. 4. 신청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실제 사용한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에 주간은 초과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3할을, 야간은 초과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5할을 가산한다. ※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한다.		

[별표 2]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기준

(제9조제4항 관련)

시 설	금 액 (시간당)	비 고
다목적 코트	10,000원 ~ 20,000원	
배드민턴 코트	5,000원 ~ 10,000원	
탁구대(1면)	5,000원 ~ 10,000원	
피트니스	20,000원 ~ 40,000원	
GX 룸	20,000원 ~ 40,000원	
기 타	1. 사용료에는 체육활동에 필요한 도구의 대여도 포함한다. 2. 위 사용료는 평일 주간을 기준으로 한다. 3. 토요일·공휴일 주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평일 주간 전용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평일, 토요일·공휴일 조기, 야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각각 가산한다.	

[별표 3]

광장이용료 기준

(제13조 관련)

1. 체육시설 및 조경시설 프로그램 이용 참가비

시 설	종 별	사용기준	금액(원)	비 고
공 통	체육시설 프로그램 이용 참가비	1인 1회당	20,000원 이하	재료비 포함
	조경시설 프로그램 이용 참가비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의 사용·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기능에 관한 사항(제1~3조)
나. 사용일에 중복 신청이 있는 경우 우선 허가 사항으로 “개인 또는 단체가 주관하는 체육행사” 신설(제5조제2항제3호)
다. 시설의 이용 및 허가와 사용료에 관한 사항(제4조 ~ 제15조)
라. 관리·운영의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16조 ~ 제18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891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가목, 나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수행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산업단지조성사업 등의 수행

라. 「관광진흥법」, 「온천법」 및 「자연공원법」 등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의 개발사업 등의 수행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26조”를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26조”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당해년도”를 “해당 연도”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영 “이라 한다.)”를 ““영”이라 한다)”로 한다.

제31조제4항 후단 중 “납부토록”을 “납부하도록”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단서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33조의2 단서 중 “「지방재정법」 제82조”를 “「지방재정법」 제82조”로 한다.

제34조제1항제7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58조”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을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세 명”을 “두 명”으로, “경우 :”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2”를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2”로, “경우 :”를 “경우:”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수도사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2]

하수도사용료 요율 및 업종구분 (제23조 관련)

가. 하수도사용료 요율표(1개월 기준)

구분 업종	사용구분(㎡)	연도별 단가(원/㎡)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부터
가정용	㎡당	480	560	630	700	770
욕탕용	500이하	520	590	660	730	800
	500초과~2,000이하	630	710	790	870	950
	2,000초과	720	810	890	970	1,050
일반용	30이하	580	660	740	820	900
	30초과~100이하	1,550	1,690	1,830	1,970	2,100
	100초과~1,000이하	2,100	2,200	2,300	2,400	2,500
	1000초과	2,200	2,300	2,400	2,500	2,600
유출지하수	㎡당	480	560	630	700	770

※ 유출지하수에 대해서는 업종 구분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율을 적용한다.

나.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표

업 종	구 분 내 용
가정용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별표 1에 따른 가정용 업종
욕탕용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별표 1에 따른 욕탕용 업종
일반용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별표 1에 따른 일반용 업종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하수도사용료를 연차별로 현실화함으로써 하수도 재정 여건을 개선하여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여 기반침하 예방 및 한강 수질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요금 현실화율 80%를 목표로 5년간 연평균 9.5% 하수도사용료 인상(별표 2)
- 나. 가정용 누진제 폐지, 일반용 누진제 기존 6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별표 2)
- 다. 유출지하수는 현재 가정용 최저 요율이 적용됨에 따라 가정용과 연계하여 개편(별표 2)
- 라. 용어 순화, 띄어쓰기 및 오기 정정 등 미비 사항을 정비

◆ 서울특별시조례 제9892호

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주택공급 촉진 및 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심주택”이란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주택을 말한다.
2. “입주자”란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3. “정비사업등”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을 말한다.
4. “사업시행자등”이란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제2호의 각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주택 건설사업의 촉진을 통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이 경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매 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에서 다음 각 목을 공제한 금액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에 따른 피해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 가. 「지방자치법」 제196조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 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금
 - 다.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의무적 지출액
2.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서울주택도

시개발공사에서 납부하는 이익배당금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적률 완화를 위해 납부한 현금
4. 다른 기금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기금의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과 그 밖의 수입
6. 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한 수입금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안심주택 사업시행자등의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 지원
2. 안심주택에 대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매입비용
3. 안심주택 입주자에 대한 주거비 등 지원
4. 정비사업등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5. 그 밖에 시민 주거복지 향상 및 주택공급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6. 여유자금의 예탁 및 예치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주택실장
2. 분임기금운용관: 주택정책과장
3. 기금출납원: 주택정책과 기금담당사무관
- ② 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운용관에게는 「지방회계법」의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을, 기금출납원에게는 같은 법의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2.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3. 기금 운용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주택실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서울특별시 주택실장
2. 위촉직
 - 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나.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 향상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기금 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택정책과 기금담당사무관이 맡는다.
 ⑥ 위원회의 구성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른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매년 두 차례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④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심의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 회의 등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3조(준용)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②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주택공급 촉진 및 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주택공급 촉진과 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주택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나. 기금의 재원 및 용도를 명시하고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 관련 사업에 활용하고자 함
- 다. 기금관리공무원 지정,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등 기금의 효율적 운용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라. 기금 운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 심의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

[규 칙]

◆ 서울특별시규칙 제4729호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 을 “필요한” 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지방보조사업자 불법행위 등 포상금 지급 신청서” 를 “포상금 지급 신청서” 로 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조례 제20조에 따른 중요재산 현황 보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2호서식】

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① 신청인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②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③ 포상금 지급신청 내용	신고접수 번 호	제 - 호		통보서 수령일
	신청금액	포상금 원		
④ 포상금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신청인 (예금주)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 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10mm × 297mm[백상지(80g/㎡)]

■ 【별지 제6호서식】

중요재산 현황

지방자치단체명					
세부사업명					
재 산 명					
유 형					
목적(용도)					
주소	시·도 구분				
	상세주소				
면적(㎡)					
내역	수량				
	단위				
취득가액(원)		계	국고보조금	지자체부담금	자기부담금
				시비: 구비:	
현재가액(원)					
보조금유형					
취득일자					
처분제한기간(일자)					
소유자구분					

210mm × 297mm[백상지(80g/㎡)]

■ 【별지 제7호서식】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증명서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 부동산		
주소		
물건	명칭	면적(㎡)
사후관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이 부동산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부기등기 대상 부동산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장 직인

유의사항

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작성합니다. / (예) 토지(○○리 마을회관부지), 건물(○○리 마을회관)
2. 해당 등기소에서는 이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년 ○○월 ○○일까지는 서울특별시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라는 문구를 함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mm × 297mm[백상지(80g/㎡)]

■ 【별지 제8호서식】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증명서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		
주소		
물건	명칭	면적(㎡)
말소 사유		
사후관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이 부동산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 따른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장 직인



210mm × 297mm[백상지(80g/㎡)]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보조사업 운영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별지 서식 등을 신설 및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가. 중요재산 보고 등 규칙에 위임한 사항 및 관련 서식 신설
(제16조, 제17조, 별지 6~8호서식)
- 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서식을 변경하여 상위 규칙(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과 통일(제7조, 별지 제2호서식)

[훈 령]

◆ 서울특별시훈령 제1064호

서울특별시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서울특별시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직속기관,”을 “직속기관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노동자”란”을 ““근로자”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노동자”를 “근로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를 “이”로, “것을 제외하고는”을 “용어를 제외하고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5. “안전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호에 따라 관리감독자를 선임할 수 없는 사업장에서 부서의 사업을 맡아 책임지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를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을 “위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고 이를 중대재해예방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2.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및 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3. 안전예산 편성·집행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 등 업무수행평가
5. 법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배치
6.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 마련
7.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
8. 급박한 위험대비, 매뉴얼 마련 및 훈련
9.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의 안전 및 보건확보
10. 안전보건관계법령에 의한 의무이행 점검

11. 유해·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7조의 제목 “(종사자의 의무)” 를 “(종사자의 책무)” 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를 “(관리책임자)”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 를 “관리책임자” 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노동자가 시의 사업장” 을 “근로자가 시의 사업장 또는 시가 제공하거나 지정 한 장소로서 시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시행령 제11조의 장소” 로, “총괄책임자 “이” 를 “총괄책임자” ” 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노동자” 를 “근로자”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별표 1” 을 “별표 1의 제4호” 로,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부서의 사업을 맡아 책임지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 를 “선임할 수 없는 사업장의 부서에서는 안전감독자가” 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 를 “법 제17조” 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 를 “법 제18조” 로, “관하여” 를 “대해” 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자” 를 “법 제22조에 따라 근로자” 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자위원” 을 “근로자위원” 으로, “구성·위촉한다” 를 “구성·운영한다”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노동자위원” 을 “근로자위원” 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노동자대표(노동자” 를 “근로자대표(근로자” 로,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으로, “노동자 간” 을 “근로자 간” 으로, “노동자 대표” 를 “근로자대표” 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노동자대표” 를 “근로자대표” 로, “이내의 노동자” 를 “이내의 근로자”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노동자위원” 을 각각 “근로자위원” 으로 한다.

제18조제3호 중 “노동자측” 을 “근로자측” 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본문 중 “노동자위원” 을 “근로자위원” 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관하여 필요한” 을 “필요한” 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정기교육)” 을 “(안전보건교육)” 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업주는 법 제29조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1. 정기교육
2. 채용시 교육
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4. 특별교육

② 제1항과 관련,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은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다.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업주는 법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제1항 중 “노동자” 를 “근로자” 로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사업주는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는 시행규칙 제98조에 따른 방호조치를 하고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제32조제2항 중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 를 “시행규칙 제124조부터 제126조까지” 로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중 “노동자” 를 각각 “근로자” 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위험물질” 을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노동자” 를 “근로자” 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작업지휘자의 배치)” 를 “(위험작업시의 안전조치)” 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규칙 제38조제1항 에 따른 작업, 고소 작업대를 사용하는 작업 또는 밀폐공간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한다.

제37조제1항 중 “노동자” 를 “근로자” 로, “관하여 필요한” 을 “필요한”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노동자” 를 각각 “근로자”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관하여 필요한” 을 “필요한”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노동자가” 를 “근로자가” 로, “노동자에게” 를 “근로자에게” 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안전점검)” 을 “(안전보건점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노동자” 를 “근로자” 로 하며, 같은 항 및 제2항 중 “안전점검” 을 각각 “안전보건점검” 으로 하고, 같은 항 중 “노동자” 를 “근로자” 로 한다.

제39조 중 “노동자” 를 “근로자” 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노동자” 를 각각 “근로자” 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관련 법령” 을 “시행규칙 제189조 및 제190조” 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노동자” 를 “근로자” 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노동자에게” 를 “근로자에게” 로, “노동자 수” 를 “근로자 수”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노동자” 를 “근로자” 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노동자” 를 “근로자” 로 한다.

제46조 중 “노동자” 를 “근로자” 로 한다.

제4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 ① 사업주는 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에 도급인과 수급인은 위험성평가를 각각 실시하여야 한다.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위험성평가의 방법) ① 위험성평가의 방법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이하 “위험성평가 지침” 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다.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위험성평가 지침 제6조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제50조(위험성평가의 절차) 위험성평가의 절차는 위험성평가 지침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다.

제51조(위험성평가의 시기) 위험성평가의 실시시기는 위험성평가 지침 제15조에 따른다.

제52조의 제목 “(위험성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을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으로 한다.

제5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5조” 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경영책임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사업주는 법 제64조에 따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작업” 을 “법 제65조에 따라, 위험작업” 으로, “및 관계수급인 노동자에게” 를 “근로자의” 로, “안전” 을 “수급인에게 안전”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을 각각 “수급인” 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노동자” 를 “근로자” 로, “관하여 필요한” 을 “필요한” 으로 한다.

제5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과 시의 안전보건 전담조직에” 를 각각 “장에게” 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과 관련, 산업재해가 발생한 부서의 관리감독자 및 안전감독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시 중대재해예방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제1호 중 “노동자” 를 “근로자” 로 한다.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자” 를 “근로자” 로 한다.

제65조제1항 및 제2항 중 “노동자” 를 각각 “근로자” 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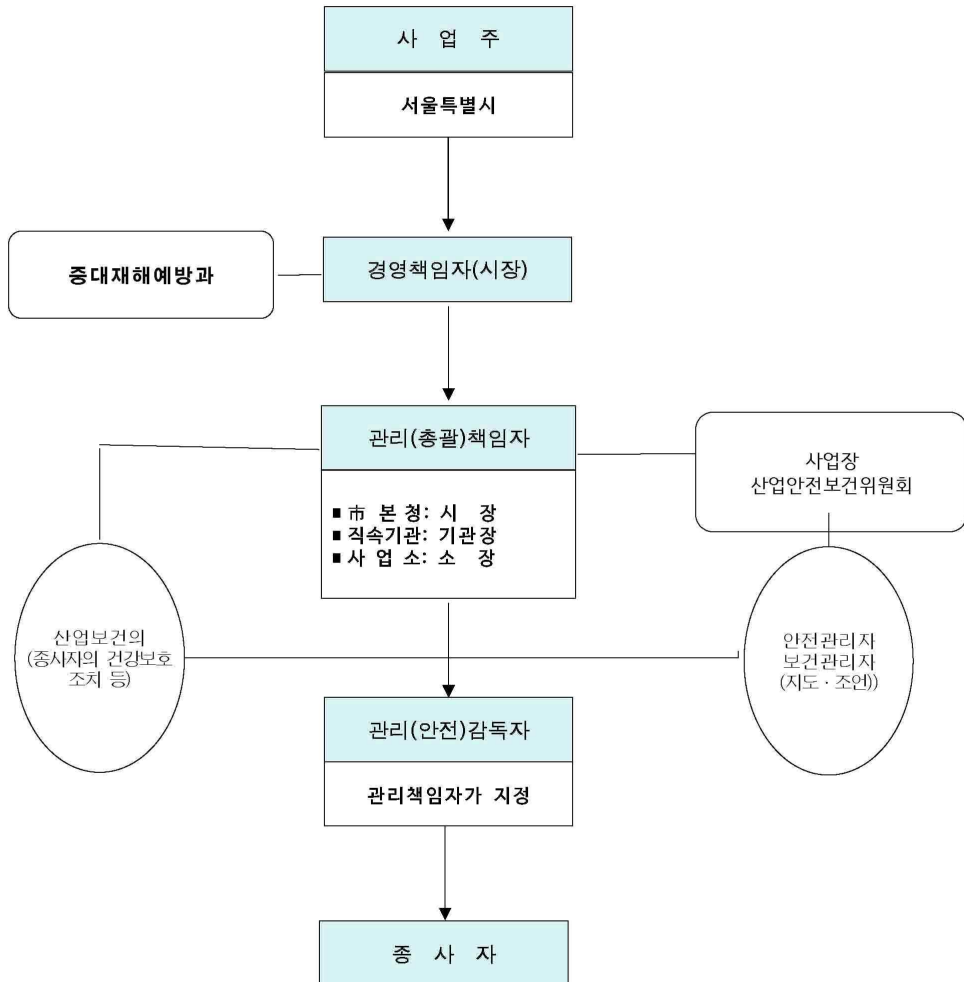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안전·보건 관리조직표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훈령 제정 이후 관계 법령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조문 현행화 필요
- 조문의 근거 법규에 조항을 명시하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의미의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조문 정비
- 고용노동부 고시로 규정되어 수시 변경되는 안전보건 의무교육 기준을 조문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제업무 효율성 저해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표현 재정비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목적·정의 규정 명료화(제1조, 제2조)
- 나. 조문 내용 구체화(제2조, 제5조, 제31조, 제35~36조 등)
- 다. 안전보건교육 유형별 교육 내용 및 시간 관한 규정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규정된 내용이므로 조항에서 삭제(제23조, 제24조, 제25조)
- 라. 위험성 평가에 대한 주체, 절차 및 방법, 시기 구체화(제48조~51조)
- 마. 상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표현 재정비

[예 규]

◆ 서울특별시에규 제743호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채널 운영부서”란 메시지민원을 접수하는 채널을 개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제1호 중 “현장민원 :”을 “현장민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일반민원 : 고충,”을 “일반민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통민원: 단순의견, 단순문의 등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채널 운영부서는 전자적 장치 등을 이용한 허위신고 또는 부적정한 민원 접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현장민원 :”을 “현장민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일반민원 :”을 “일반민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소통민원 :”을 “소통민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종결처리”를 “종결 처리”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종결처리 하고자”를 “종결 처리하고자”로, “종결처리 시”를 “종결 처리 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종결처리는 1·2차 답변 결재자의 차상급자 이상”을 “종결 처리는 민원 처리주무부서장의”로 한다.

제7조제3항 전단 중 “별표 3”을 “별표 2”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삭제하고, 별표 3을 별표 2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현장민원 처리기준(제5조제1항제1호 관련)

연번	분야	민원목록	세부항목	처리시간		
				즉시	24시간 이내	확인 후 안내
1	교통	불법주정차	불법주정차 단속	●		
2		거주자 우선 주차 위반	거주자 우선 주차 위반차량 견인	●		
3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차량 단속		●	
4		방치차량	방치차량 견인, 이론차 단속			●
5		야간 지정차고지 위반	야간시간 사업용 차량 지정차고지 이외 무단 주차 단속		●	
6		친환경 자동차전기차 위반행위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정차,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불법주차 및 충전 방해행위,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훼손행위 단속			●
7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방치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이동 및 단속		●	
8		<u>교통시설물</u>	보행자 안내표지판, 교통시설물 및 교통표지판 신설, 버스 정류장 신설 요청			●
9	도로	도로시설물	교량, 터널, 육교, 축대, 옹벽, 지하도 파손 등			●
10		도로시설물 안전	도로침하·함몰·씽크홀·동공 등 도로파손, 도로시설,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등 파손에 따른 사고 위험		●	
11		도로 불편사항	도로파손 등			●
12		보도 불편사항	보도블록 정비 등			●
13		지하시설물	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 난방 관로 등 지하시설물의 안전사고 위험		●	
14		보안등 고장	고장수리 (조도개선, 부점등 등)		●	
15		가로등 고장	고장수리 (조도개선, 부점등 등)		●	
16		공중선 불량	불량 공중선 처리			●
17		제설 요청	(계절적 업무)		●	
18		자전거 전용 도로 불편사항	자전거 도로 이용 불편신고(도로파손 등 신고, 건의제안)			●
19		자전거보관소 불편사항	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 무단방치 자전거 관리, 보관대 유지 보수			●
20	청소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무단투기 신고			●
21		규격 봉투 미수거	음식물, 생활 쓰레기 등 미수거(비정상 배출 시 확인 후 안내)			●
22		대형 폐기물 미수거	신고 폐기물 미수거(비정상 배출 시 확인 후 안내)			●
23		가로 청소요청	가로변 청소요청			●
24		재활용 수집 운반	재활용 미수거 등			●
25		정화조 관리	정화조 설치 및 준공			●
26		생활 쓰레기 처리	생활 쓰레기 처리(1회용품, 폐건전지, 형광등 등)			●
27	주택 건축	공사장 안전·불편 신고	건설기계 오작동, 건설자재 낙하 등 각종 공사장 위험, 보행 불편 등		●	
28		무허가 신고	무허가 건축물 신고			●
29		공동주택물 이용관련 불편	공동주택물 이용 시 불편사항 등			●
30		건축물, 공작물 위험	건축물이나 옹벽,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등의 균열, 기울어짐 등 붕괴나 전도 우려		●	
31		주택가 감전 위험	누전, 합선 등에 따른 감전사고 위험		●	
32	치수	하수시설	하수도파손, 빗물받이, 준설 등		●	

연번	분야	민원목록	세부항목	처리시간		
				즉시	24시간 이내	확인 후 안내
33	방재	하수도 맨홀	맨홀뚜껑 불량, 손실 등		●	
34		수방시설물	수방 관련 시설물			●
35		풍수해(침수)신고	풍수해, 침수 신고, 하천범람 신고 등		●	
36		하천 시설물	하천 시설물(체육시설 등) 신고			●
37	가로 정비	불법 광고물	불법 광고물 처리요청		●	
38		노상 적치물 정비	노상 적치물 무단점용			●
39		노점상 단속	노점상 무단점용			●
40	보건	방역 요청	방역처리 요청		●	
41		유기 동물 신고	유기견, 고양이 등 신고	●		
42		동물 사체 신고	동물 사체의 위생적 처리(로드킬)	●		
43		동물 기타 신고	중성화 수술 요청, 동물 관련 기타 신고			●
44		부정불량식품 신고	식품위생 관련(부정불량식품 등) 신고			●
45		위생 불량 신고	위생 불량업소 신고			●
46		원산지 위반 신고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신고			●
47		집단 식중독 신고	집단 식중독 신고			●
48		집단 급식소 관리	집단 급식소 관리			●
49		영업장 외 영업 신고	식품접객업소 등 영업장 외 영업 신고			●
50		금연 구역 위반	금연 건물, 금연거리 등 금연 구역 위반			●
51		가로수 녹지대 파손	가로수 녹지대 시설 파손, 가로수 전지 작업 요청 등		●	
52	공원 녹지	공원 이용 불편사항	공원시설물 파손, 보수 요청, 공원 청소 상태 불량, 등산로 불편사항 등 이용시민 불편사항			●
53		공원(약수터 등) 수질관리	공원 내 지하수 실태조사, 수질관리 등			●
54		산사태	절토사면 등 산사태 발생 징후		●	
55	환경	소음	공사장, 에어컨, 노래방 소음 등		●	
56		악취	사업장 (폐유 등) 악취 신고		●	
57		진동	공사장 진동 등		●	
58		매연	사업장 (대기배출신고사업소 등) 매연 신고		●	
59		비산먼지발생사업장	공사장 먼지 관련 민원 등		●	
60		불법소각	불법소각 신고			●
61		환경오염	유독물질 유출, 오폐수 방류,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관리			●
62	경제 산업	불법통신판매업 유해신고	불법통신판매업 유해신고			●
63		부동산중개 불편사항	부동산중개업 위법행위 신고			●
64		대부업 관련 불편사항	대부업 피해 신고			●
65	기타	다중이용시설물 이용불편	구청사, 동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 구민회관, 구립체육관(구립체육시설) / 구립도서관, 노인복지관, 아동복지시설, 문화시설 등 다중이용시설물 불편신고			●
66		여성불편	화장실, 수유시설, 기저귀 교환장소, 휴식공간 등			●
67		관광복지	문화재, 공연장, 전시장, 각종 복지시설 관련 불편사항			●
68		방법시설	CCTV(방법용,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등) 설치보수 등 불편사항			●
69		행사	행사(단가장기)장 이용 불편			●

연번	분야	민원목록	세부항목	처리시간		
				즉시	24시간 이내	확인 후 안내
70		행사장 안전	각종 행사장 안전 신고		●	
71		공중화장실 불편신고	변기파손, 고장신고 등			●
72		소방안전	소방시설 점검 등			●
73	건의	건의·제안사항	그 밖의 건의·제안사항 등			●

※ 비고

- 1) 교통분야: 불법주정차 단속의 경우 민원신고 시 신고내용 또는 현장사진을 통하여 위반 일시·장소, 위반 사항, 차량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즉시 처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한을 즉시가 아닌 확인 후 안내로 변경할 수 있다.
- 2)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시설을 말한다.
- 3) 민원 처리자는 안전·위험신고 민원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될 경우 각 기관(부서)이 수립한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 4) '확인 후 안내' 는 24시간 이내 민원처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할 수 있다.

<별표 2>

접수 및 처리부서 지정에 대한 안내메시지(제7조제3항 관련)

접수(1단계) 안내메시지	처리부서 지정(2단계) 안내메시지
○○○님의 ~~ 의견이 △△△년 △△월 △△일 △△번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우리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님의 ~~ 의견은 □□과 (02-123-1234)에서 △△△년 △△월 △△일까지 처리예정입니다. 다시 한 번 소중한 의견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 접수와 처리완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소통신원의 경우 안내메시지를 혼용하여 쓸 수 있음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령 등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메시지민원 종류 및 정의를 정비하여, 민원 현장의 혼선을 예방하고자 함
- 비정상적인 전자민원 예방 및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처리 규정 개선으로 민원공무원 보호 및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변화하는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민원 처리 절차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장민원 항목 신설 및 일부 현장민원 처리기한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메시지민원 종류 중 “제안민원” 을 삭제함(제3조제2호 및 제5조제1항제2호, 별표 2)
- 나. “일반민원” 정의 중 “고충” 및 “소통민원” 정의 중 “감정표현” 을 삭제함 (제3조제3호 및 제3조제4호)
- 다.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비정상적인 민원 예방조치를 위하여 메시지민원 채널을 신규 개설하고 이를 운영하는 부서인 “채널 운영부서” 관련 사항을 신설하고, 기술적 조치 의무를 명시(제2조제5호 및 제4조제3항 신설)
- 라. 정당하지 않은 반복민원 종결처리 결재 권한자를 기존 1, 2차 답변 결재자의 차상급자 이상에서 민원 처리주무부서장으로 결재권한 하향화(제6조의2제2항)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